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범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경찰연구관 김 문 귀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4
제2장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	5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제	5
1. 회복적 사법이론 개관	5
가. 기원 및 발전	5
나. 개념정의	8
다. 가치와 원리	11
라. 형사사법과의 비교	12
마. 기여점	15
2. 회복적 사법의 실행	17
가. 대표적 실무 유형	17
나. 회복적 사법의 유망성	23

제2절 회복적 경찰활동	24
1. 의의	24
2. 특징과 원칙	25
3. 지역사회경찰활동과의 관계	26
4. 회복적 사범과 경찰의 역할	29

제3장 외국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대응 사례 31

제1절 영미권 국가	31
1. 호주	31
가. Wagga Wagga 경찰회합모델	31
나. 재통합적 수치심주기 실험	33
2. 미국	34
가. 균형적·회복적 소년사범정책	34
나. Bethlehem 경찰 가족회합 프로젝트	35
3. 영국	38
가. 영국의 회복적 소년사범정책	38
나. Thames Valley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39
4. 캐나다	43
가. 왕립기마경찰의 회합	43
나. 새로운 소년사범과 사범외적 처분	44
제2절 유럽 국가	46
1. 벨기에	46
2. 네덜란드	48
가. 경미소년사건의 HALT 위탁	48
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 : 배상청구 해결	49
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응 : FF-Kappe	50

제4장 한국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 대응방안 모색 52

제1절 경찰의 소년범죄 대응 현황 및 문제점 52

- 1. 소년범죄 실태 52
- 2.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정책 56
 - 가. 학교전담경찰관 56
 - 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58
 - 다.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 정책 60
- 3. 회복적 사범의 관점에서 본 경찰정책의 문제점 71
 - 가. 응보주의에 기반 71
 - 나. 가해자 중심 : 피해자와 지역사회 배제 72

제2절 경찰단계 회복적 사범 활용방안 및 해결과제 74

- 1. 경찰단계 회복적 사범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74
- 2. 구체적인 활용방안 76
 - 가. 경찰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범 프로그램과의 연계 76
 - 나. 소년의 지역사회에의 위탁 87
 - 다. 비공식적 회복적 활동 87
- 3. 성공적인 회복적 개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89
 - 가. 선결과제 : 경찰관의 인식 전환 89
 - 나. 법적 뒷받침 90
 - 다.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 93
 - 라. 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 98

제5장 결 론 100

제1절 요약 100

제2절 전망 102

참고 문헌 104

표 목 차

<표 1> 응보적 사법패러다임과 회복적 사법패러다임 비교	14-15
<표 2> 조정의 단계	18
<표 3> 회합의 단계	19
<표 4> 서클의 단계	20
<표 5> 최근 10년간 소년범 현황	52
<표 6> 최근 5년간 소년범 유형별 검거현황	53
<표 7>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비율	54
<표 8> 연령별 소년범 현황	55
<표 9> 소년범 재범율 현황	55
<표 10> 2013년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57
<표 11>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57
<표 12>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58
<표 13> 2013년 월간 학교폭력 신고추이	59
<표 14>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현황	61
<표 15> 전문가 참여 소년범 재범 추적결과	63
<표 16> 전문가 참여 소년범 재범률 분석결과	63
<표 17> 2013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교육 활동	66
<표 18> 2013-2014년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67
<표 19> 2013-2014년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	69
<표 20> 표준 선도프로그램 교육내용	70

그림 목 차

<그림 1>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흐름도	62
<그림 2> 경미·초범 소년범 처리 절차도	6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필요성

현 정부 들어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선정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및 관계부처의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근절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¹⁾. 하지만, 진주의 연이은 학교폭력 사망사건²⁾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쏟아내고 있는 소위 ‘특단의’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더 거시적으로 보면 기존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대응방식은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응보주의와 소년의 갱생을 강조하는 사회복귀모델(교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화된 소년범죄 현실에서 재범률 감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다른 효

1)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의 국민안전체감도 조사(2013. 7~12월) 결과, 국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7월보다 12월에는 15.8% 감소하였고, 2012년 대비 2013년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은 78%(9.6%→2.1%) 감소하였다고 한다.

2) 2014년 3월 31.경 동급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교내에서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사망하였고, 재차 4.11경 같은 학교 기숙사내에서 하급생들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상급생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사망한 사건임.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소년범죄 처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에는 공식적인 사법처리과정을 벗어나 좀 더 ‘융통적이고 인간적인 대책’³⁾을 강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사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이 제3자(조정자·촉진자·진행자 등)의 중재 하에 범죄문제해결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의 회복, 당사자들의 사회재통합, 사회평화 재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대응에 관한 일체의 이론·패러다임·철학·제도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이론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1970년대 이후 수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해 연구와 실험성고가 축적되어 왔으며, 20세기 후반 이래 각국의 형사사법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회복적 사법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형사사법체계내에 이를 도입하려는 실천적 노력도 전개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에 성인에 대한 검찰단계의 형사조정(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제46조)과 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의 화해권고(소년법 제24조의 3)라는 회복적 사법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형사실무에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회복

3) 원혜옥,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14권 제1호, 2006, 307면.

4)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정의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사용된 정의임. UN Economic and Social resolution 2000/14 of 27 July 2000 o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criminal matters in: Resolution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ECOSOC at its substantive session of 2000(5 to 28 July 2000), Distr: General, 15 Aug 2000, p. 36 참조.

적 사법의 적용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회복적 사법의 실행은 기소 前 단계부터 재판 이후 단계까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조치들은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최초 단계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형사절차의 첫 관문이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복적 사법이 발전한 영미권 및 유럽 국가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경찰활동을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실무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도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소년사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2. 연구목적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좀 더 근본적·건설적·생산적 방식으로 소년범죄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철학적 기반으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경찰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소년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 개괄하고, 제3장에서는 소년범죄와 관련한 주요 외국경찰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찰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한국경찰의 정책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전망을 타진해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자료 및 경찰내부 보고서 등 경찰자료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경찰관계자 면담 및 전화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제2장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제

1. 회복적 사법이론 개관

가. 기원 및 발전

응보주의에 기반한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1970년대 중반 이후 재범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회복귀주의에 입각한 형사정책의 실패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⁵⁾. 범죄를 그것이 갖는 모든 영향력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고전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에 관련된 모든 주역들, 즉 피해자, 가해자, 가족 등 그들의 주위사람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처럼, 회복적 사법은 무엇보다도 범죄대응과 관련한 전통 형사사법체계의 비효율성과 기능장애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된 개념이다. 이 이외에도 피해자의 재발견과 권리 신장, 국가적 관료주의의 불투명성과 행정행위의 비신속성, 국가권력의 사인화에 대한 요구, 형벌폐지주의적 접근방식, 공동체 사상, 사법의 부담 경감 등도 회복적 사법이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⁶⁾.

5)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8면 참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1977년 Albert Eaglas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그런데, 회복적 사법은 갑자기 출현하게 된 개념이나 실천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회복적 사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혁을 가진 사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⁸⁾. 또한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는 가치와 원칙은 아랍,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물론 불교, 유교, 도교 등의 문화권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인류역사상 보편적인 문화형태로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원래 회복적 사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 분쟁해소절차 또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캐나다의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 등 다양한 토착적 전통이다. 이들 사회에서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고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가 충족됨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현대에 들어와서 회복적 사법은 1970년대에 북미와 유럽에서 재발견되었고, 이후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¹⁰⁾.

현대적 의미의 회복적 사법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엘미라(Elmira)시에서 소년범죄사건의 선고 이후 단계의 가해자와 피해자 조정의 형태로 처음 실천된 후, 1976년에는 인디애나(Indiana)주

-
- 6) 회복적 사법의 등장배경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진국, 오영근, 앞의 글, 72-80면; 이원상,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53-64면.
- 7)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8권 제1호, 2000, 206-207면 참조.
- 8) 회복적 사법의 기원에 대해서는 Johnstone(G.),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Willan Pub, 2002, pp, 36-61; Weitekamp(E.), The history of restorative justice, in Johnstone(G.) (Ed.), A restorative justice reader. Texts, sources, context, Willan Pub, 2003, pp. 111-124 참조.
- 9) Hadley(M.L.) (Ed.), The Spiritual Roots of Restorative Justice,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 10) 회복적 사법이 발전되게 된 데에는 회복적 사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미국의 Howard Zehr의 선구적인 작업에 힘입은 바 크다. Howard Zehr 이외에도 회복적 사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로는 호주의 John Braithwaite, 미국의 Mark Umbreit, 벨기에의 Lode Walgrave 등을 들 수 있다.

엘카아트(Elkhart) 카운티의 메노나이트(Mennonites) 교단을 통해 미국으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 들어와 북미,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당사자들과의 만남 또는 협의를 주선하는 수많은 회복적 사법 실무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¹¹⁾, 현재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철학을 형사사법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실험 및 법제화 작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기구 혹은 지역기구 단위의 노력도 회복적 사법의 발전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¹²⁾.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은 2000년 4월에 개최된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제10차 총회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에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권리,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처분,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장려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적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2005년 4월 방콕에서 개최된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를 위한 제11차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에서 기소대체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기반한 정책, 절차,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역설한 바 있다. 2006년 11월에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국에서 회복적 사법의 발전을 장려하고 실무에서 조화롭게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유럽 수준에서도, 1999년 유럽 평의회에서 형사사건에 있어 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시작으로 회원국들에게 형사조정 및 회복적 사법 실무들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권고안, 결의안,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벨기에에 본부

11)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348면.

12) 회복적 사법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Aertsen(I.) et al., *Renouer les liens sociaux. Médiation et justice réparatrice en Europe*, Ed. du Conseil de l'Europe, 2004; Pignoux(N.), *La répar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s pénales*, Paris : L'Harmattan, coll. Sciences criminelles, 2008, pp. 367-368 참조.

를 두고 있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및 회복적 사법을 위한 유럽포럼이라는 비정부기구가 탄생했는데, 유럽 전체에 조정과 여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적용 영역은 형사사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회복적 사법은 학교, 직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해와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논쟁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논의에서도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좀 더 심오하고 넓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적용영역이 확장되면서 회복적 사법은 전 세계 공동체내에의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¹³⁾.

나. 개념 정의

1) 개념적 다양성과 복잡성

회복적 사법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그리고 특히 일관되고 설득력있는 회복적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렇지 않다면 회복적이라고 불리는 처분들이 회복적 사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실행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오래된 전통과 국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든 개념이다.

우선, 회복적 사법을 지칭하는 용어가 각 나라 혹은 지역에서 회복적 사법이 실행되는 맥락과 용법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이 두고 있는 의미론적 강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¹⁴⁾. 요컨대, ‘회복적’이라는 형용

13) 형사사법 분야 이외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갈등에 관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에 관해서는 Dussich(J.P.L), Schellenberg(J) (Eds.), The promise of restorative justice: New approaches for criminal justice and beyond, Lynne Rienner pub., 2010 참조.

14) 더 나아가서 동일 언어권에서조차 restorative justice 용어의 번역도 통일되어 있지 않

사 대신 ‘관계적’, ‘참여적’, ‘합의적’, ‘변형적’, ‘변혁적’, ‘창조적’, ‘협동적’, ‘재건설적’, ‘이해적’, ‘전환적’, ‘대안적’ 등 다양한 수식어가 사용된다¹⁵⁾. 더 나아가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공통으로 인정되는 단일의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은 각국의 다양한 전통 혹은 사회운동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며 실무와 더불어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 또는 형사사법에 대한 학술이론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실무경험의 축적에 따라 정리되어 왔던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은 각 나라의 법질서나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 내지 프로그램의 명칭과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회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은 회복적 사법의 특징 중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회복적 사법을 개념화하고자 시도했다. 회복적 사법 개념에 관한 회복적 사법 지지자간의 대표적인 의견불일치는 순수모델과 최대화 모델을 주장하는 입장간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⁶⁾. 전자는 사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로 특징지어지는 절차를 회복적 사법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절차보다는 원상회복이라는 결과물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전자의 입장에 기초한 대표적인 정의는 Tony Marshall의 정의로, 그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범죄의 결과와 미래의 과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후자의 입장에 기초한 대표적인 정의는 Lode Walgrave의 정의로, 그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절차 이상의 것으로

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justice restaurative, justice restraauratrice, justice réparatrice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 대신 수복적 사법이라는 일본식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15) 회복적 사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Cario(R.), Justice restaurative. Principes et promesses, Ed. L'Harmattan, Coll. Traité de sciences criminelles, vol. 8, 2è éd. 2010, pp. 73-74 참조.

16) 이 논쟁에 대해서는 박상식,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모델과 실천모델, 법학연구,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63-196면 참조.

우선적으로 범죄로 인해 야기된 고통과 피해의 원상회복을 지향하는 사법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회복적 사법에 있어 절차와 결과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개념 규정¹⁷⁾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회복적 절차를 사용하고 회복적 결과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갖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기술된다¹⁸⁾. 여기서 회복적 절차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만일 있다면, 범죄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이 일반적으로 조정자(Mediator) 혹은 촉진자(facilitator)의 도움하에, 모두 함께 능동적으로 범죄로 인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복적 결과는 회복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합의를 의미한다.

2) 탄력적 접근법의 이점

개념, 모델, 패러다임, 절차, 접근법, 생각하는 방식, 지향점, 관점 등으로 다양하게 성격규정되는 회복적 사법은 그 내용, 야심 그리고 유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들을 낳기 쉽다. 개념적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회복적 사법은 모호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회복적 사법의 발전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일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회복적 사법 운동의 창조성과 풍부함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이 의견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 개념을 정교하게 정의하고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순간 오히려 실천적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 회복적 사법의 의미를 찾는 작업은 다른 회복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하나의 요소를 내세우는 것을

17) 각주 4) 참조.

18) Pignoux(N.), 앞의 책, p. 370.

19) Johnstone(G.), Van Ness(D.),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in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 2007, p 9 그리고 pp. 19-20 참조.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개념의 풍부함을 평가하고 회복적 처분들을 범죄 현상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회복적 사법에 관한 통일적인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개념의 다양성과 갈등을 제거하는 대신에, 회복적 사법의 운동내의 내제하는 다양성이 창조성과 변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의 탄력성(flexibility)은 그것이 많은 나라에서 법적·문화적 제약에 따라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더 나아가서 회복적 사법의 탄력성과 높은 적용가능성은 회복적 실무의 핵심에 대한 오해의 위험성을 막아준다²⁰).

다. 가치와 원리

회복적 사법은 사전에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엄격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범죄의 표면 및 이면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다른 집단을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와 원리의 총체로 이해되어야 한다²¹).

1) 회복적 가치

회복적 사법의 가치란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철학을 지탱해주는 근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금석이며,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회복적 사법의 가치들은 회복적 원칙과 프로그램에 그대로 녹아있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중시되는 가치들로는 존경, 타인 받아들이기, 평등, 진실 말하기, 듣는 것, 상호이해, 연대, 겸손, 솔직함, 책임감 느끼기, 인간 존엄성, 재통합 등을

20) Pignoux(N.), 앞의 책, p. 371.

21) Zehr(H.),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Pub., 2002, p. 10.

들 수 있는데²²⁾, 이는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가치들이기도 하다.

2) 회복적 원리

회복적 사법의 원리는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상적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회복적 사법을 다른 유형의 사법과 구분짓게 하는 실천 지침을 말한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핵심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핵심원리로 언급되고 있다²³⁾. 첫째,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피해의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 둘째, 피해의 회복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회복적 사법은 갈등해결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라. 형사사법과의 비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회복적 사법은 전통 형사사법체계의 범죄대응에 대한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이 어떤 점에서 기존 형사사법과 다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교 작업을 통해서 회복적 사법의 특징과 그 가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응보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회복적 사법의 차별성은

22) 회복적 사법에서 강조되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Pranis(K.), Restorative values, in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2007, 앞의 책, pp. 59-74 참조.

23)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7, 309-310면.

무엇보다도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에 있다. 전통 형사사법에서 범죄는 법에 의해 성립된 추상적인 사회규범 위반으로 이해된다. 즉, 범죄는 사회의 이익의 추상적인 위반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화는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과 관련해서, 범죄에 의해 부정된 사회적 가치의 재확인과 형벌의 부과를 통한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된다. 처벌이 범죄로 인해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전통 형사사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가해자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반면, 회복적 사법에서 범죄는 한 개인 혹은 여러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야기된 해악(harms)으로 이해된다. 범죄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이 구체화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범죄는 범죄가 발생한 맥락속에서 이해된다. 즉, 가해자의 측면에서, 범죄에 의해 표명된 단절의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회복적 사법이 제기하는 질문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²⁴⁾.

2) 포섭적 목표와 절차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는 회복적 사법은 사법정의에 부여된 목표와 관련해서도 전통 형사사법과 구분된다. 사법의 목표는 더 이상 처벌하고 낙인을 찍으면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excluding)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내에서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 가해자를 사회에 재통합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을 사회내에 끌어안는 것(including)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현행 형사소송절차를 특징짓는 수직성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회복적 사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절차, 즉, 범죄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능동

24) 이러한 비교에 대해서는 Pignoux(N.), 앞의 책, pp. 371-372 참조.

적이고 평등한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비공식적 절차를 요구한다²⁵⁾.

이 밖에도 회복적 사법과 고전 형사사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되는데, 두 사법간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하워드 제어에 의해 가장 명료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표 1> 응보적 사법패러다임과 회복적 사법패러다임 비교²⁶⁾

고전 형사사법(응보적 사법)	회복적 사법
범죄는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	범죄는 한 개인에 대한 침해로 정의된다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 비난과 유죄의 확정에 초점을 둔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책무와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
적대적 관계와 절차의 원칙	대화와 협상의 원칙
징벌을 통한 고통부과, 억지와 예방	화해,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책임
사법정의를 목적과 절차에 의해 파악된다: 적법절차	사법정의를 정당한 관계와 결과로 파악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범죄의 속성은 은폐되고 억압된다; 갈등은 개인과 국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범죄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갈등을 인정한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특정한 사회적 피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사회적 피해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25) 이러한 비교에 대해서는 Pignoux(N.), 앞의 책, pp. 373-375 참조.

26) 김용세,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 12권 제2호, 2004, 30-31면에서 재발취.

고전 형사사법(응보적 사법)	회복적 사법
지역사회를 배제한 채, 국가가 대리한다는 추상적 원리 적용	지역사회는 회복적 사법절차에서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치의 존중	상호관계의 존중
국가가 가해자에게 직접 작용한다 - 피해자는 소외된다 - 가해자는 피동적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절차에 참여한다 - 피해자의 권리와 기대는 존중된다 - 가해자는 스스로 책임을 수용한다
가해자의 유책성은 형벌의 전제가 된다	유책한 가해자에게는 자기 행동의 악영향을 이해하고 어떻게 상황을 바로 잡을 것인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마. 기여점

회복적 사법의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론적·실무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법으로서 회복적 사법은 이론의 여지없이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그들 스스로의 사건의 해결에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에 연관된 모든 이들의 만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처럼 회복적 모델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국가와 가해자에서 피해자와 공동체에까지 넓힘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윈윈전략(Win-Win strategies)에 기초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현대 형사사법체계 역시 회복적 전략의 수혜자가 된다.

1) 사건 당사자 및 공동체에 대한 혜택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복적 처분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완전하게 인정

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이 물질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상징적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틀을 제공한다. 회복적 절차의 수혜자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요구에도 관심을 두는데, 가해자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공동체에 야기된 해악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그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재통합되도록 기여한다. 공동체 역시 회복적 사법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관련 당사자들의 사회재통합을 통해서 범죄에 의해 끊어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재건되고 이로써 공동체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다²⁷⁾.

2)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혜택

회복적 사법은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하게 대체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개선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비록, 형사사법체계와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실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복적 처분들은 적정 절차(due process)의 원칙하에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실행된다.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간의 관계는 배타적이 아니라 보충적이다²⁸⁾. 회복적 사법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파괴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처벌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법의 일에 좀 더 인간적인 측면들을 붙여놓는다. 이러한 사법의 (재)인간화는 시민들의 형사사법 및 그 전문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단기자유형에의 회부가 회복적 절차를 통해 대체된다면 사법 비용면에서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²⁹⁾.

27)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Cario(R.), 앞의 책, pp. 99-103 참조.

28)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사법간의 공존 혹은 상호보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호중(2007), 앞의 논문, 310-312면.

29) 회복적 사법이 형사사법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Cario(R.), 앞의 책, pp. 79-83 참조.

2. 회복적 사법의 실행

회복적 사법의 적응성과 유망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회복적 프로그램들을 실무와 형사 입법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회복적 처분들은 형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기능, 당사자들의 참여 정도,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각 나라 혹은 지역의 법적·문화적·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그 운용 방식이 다르다.

가. 대표적 실무 유형

1) 세 가지 기본 모델

가) 조정모델(mediation models)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조정 모델³⁰⁾은 주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중립적인 조정자 혹은 촉진자(진행자)의 지원과 통제 하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나 범죄로 인한 갈등의 다양한 측면들과 영향들을 논의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각자에 대한 서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상호이해 및 건설적이고 평등한 교환 관념에 기초해서 조정은 가해자로 하여금 그의 행동의 인간적·사회적·물질적 영향을 알게 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서로의

30) 조정모델에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이외에도 ‘지역사회 조정’, ‘피해자-가해자 화해’, ‘피해자-가해자 회합’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복적 소년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40-41면 참조.

입장을 배려 및 고려할 수 있게끔 한다. 조정은 <표2>와 같이 대체로 몇 가지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³¹⁾.

.<표 2> 조정의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 사건의 조정예의 적격성 심사 및 회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성격, 당사자들의 특징, 범죄 발생의 맥락 등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고유한 기준에 따라 사건의 조정 처분에의 적격성 심사 - 중한 범죄 역시 회부될 수 있음 - 적격성 심사 및 조정예의 회부는 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2단계 : 조정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사건의 조정 회부가 결정되면, 조정자는 만남을 준비한다 - 조정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사전에 만나서 당사자들의 조정참여에 대한 동의의사가 분명한지 그리고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단계 : 만남(조정회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회의에서 조정자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범죄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을 서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합한 해결책을 논의하게끔 한다 - 조정자는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제약을 준다거나 지도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된다
4단계 : 합의 도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회의는 그 내용이 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합의에 의해 종결된다 -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정자와 합의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사법기관(검찰, 법원)은 비례성, 공정성 등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확인
5단계 : 합의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합의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조정자에게 의해 감독된다 - 나라에 따라 이 단계는 생략되기도 한다

31) 조정모델의 특징과 절차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Cario(R.), 앞의 책, pp. 109-110 그리고 p. 124; Pignoux(N.), 앞의 책, p. 376 참조.

나) 회합모델(conferencing models)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로 잘 알려져있는 회합모델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실천된 뒤, 호주, 캐나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모델은 주로 소년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피해자-가해자 조정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좀 더 넓은 유형의 조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회합 절차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도 갈등해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주로 당사자들의 가족이나 친구, 사법·경찰·위생·사회 기관의 대표자들이 회합에 참여한다. 회합 모델은 가족적 혹은 사회적 환경이 당사자들, 특히 가해자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지원과 지지가 갖는 특성을 활용해서 가해자가 미래에 그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와 공동체에 끼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회합은 <표 3>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³²⁾.

.<표 3> 회합의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 회합 준비단계	- 조정자는 사건을 깊이있게 조사하고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서 그들의 생각, 참여동기, 태도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절차를 소개하고 참여에의 동의를 구한다.
2단계 : 회합 단계	- 회합에서는 1)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순으로 사건과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2) 가해자와 그의 가족이 퇴정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 원상회복책을 논의한다. 3)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선택한 해결책을 피해자 그리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4) 이 과정은 합의사항이 도출될때까지 계속된다
3단계 : 합의 효력 부여 및 실행 감독	- 합의가 도출되면 조정자는 합의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의 실행 여부를 감독한다

32) 회합모델의 특징과 절차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Cario(R.), 앞의 책, pp. 110-112 그리고 pp. 124-125; Pignoux(N.), 앞의 책, pp. 376-377 참조.

다) 서클모델(circle models)

서클 모델은 캐나다와 북미 원주민사회에서 발전된 분쟁해결방식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모델로서, 대표적인 것이 sentencing circles이다. 앞의 두 모델과는 달리 이 모델은 참여자의 수(15에서 50명)에 있어 가장 폭넓은 모델로서, 범죄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구성원들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범죄에 의해 교란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재건 혹은 강화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서클은 범죄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적합한 형과 관련해서 판사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무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클은 일반적으로 <표 4>와 같이 세 단계로 조직된다³³⁾.

<표 4> 서클의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 서클 준비 단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클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면 각자 따로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정화 의식이 이뤄진다
2단계 : 만남 단계	- 서클에 앉은 사건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는 독수리 깃털, 돌 등 상징적인 물건의 형태를 띤 소위 발언 막대기를 돌리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발언한다 - 법관 또는 그 대표자의 면전에서 갈등의 모든 측면과 해결방식이 총체적 시각에서 논의된다
3단계 : 합의 도출 및 인증 단계	-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모두에 적합한 해결책이 도출되면 합의의 인증은 법관이 한다 - 법관은 참여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고, 거부하거나 바꾸거나 보충할 수 있다

33) 서클모델의 특징과 절차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Cario(R.), 앞의 책, pp. 113-115 그리고 pp. 125-126 참조.

2) 여타 주요한 회복적 접근법들³⁴⁾

가) 판결 이후의 회복적 만남 (rencontres restauratives post-sentencielles)

이것은 판결(일반적으로 자유박탈형 선고) 이후 특별히 훈련받은 조정자(촉진자 혹은 진행자)에 의한 피선고인과 피해자간의 만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분야 역시 북미가 선구적이다. 이러한 만남은 앞에서 언급된 회복적 처분들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선고된 형사제재가 실행중인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보통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가 많다. 판결 이후의 회복적 만남은 당사자들의 범죄 이후 계속되는 부정적 감정의 자유로운 발산에 중점을 둠으로써 좀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매우 원상회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접근법의 목적은 더 이상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범죄의 영향과 결과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판결 이후의 회복적 만남은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책임의 측면에서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진실성을 확인하며, 각자의 인간성의 (재)발견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만남은 참여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나 피선고인의 요구에 의해 “판결이후 조정”이 가능한데, 이는 주로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당사자들이 서로 모르고 있는 경우, 피해자 혹은 가해자 지원 기관의 제안에 의해 “수형자와 피해자의 만남”이 가능한데, 이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수형자들과 피해자들의 단체적인 만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34) 아래 설명은 Cario(R.), 앞의 책, pp. 115-122 그리고 pp. 126-129를 요약한 것인데, 주로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제도들에 관한 것이다.

나) 후원 및 책임 서클 (cercles de soutien et de responsabilité)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는 종종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것을 달갑지않게 생각하며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시작한 후원 및 책임 서클은 회복적 사법의 특수한 적용으로서, 높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됨으로써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움으로써 공동체가 미래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 처분의 목적은 석방된 성범죄들에게 지원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떻게 그들이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사회재편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 아동 그리고 성범죄에 취약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공동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이 처분의 목적은 두 가지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누구도 버림의 대상은 아니다”. 이 처분은 공동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인 성범죄 관련 직업인 그리고 성범죄자와의 만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석방전부터 석방후까지 장기간(1년 이상)에 걸쳐 실행된다.

다) 다수 피해자 발생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접근 (approches restauratives relatives aux victimisations de masse)

인권유린범죄, 인종학살범죄 그리고 전쟁범죄와 같은 다수 피해자 발생 범죄와 관련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이 이행기에 있었던 사회에서 갈등의 집단적 해결을 위해 고안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s)가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접근법으로 꼽힌다. 이 접근법의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문건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적 화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정책

(apartheid)에 의해 분열된 국가의 재건 및 화해 목적으로 탄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이 분야를 대표한다.

어떤 나라들은 회복적 성격을 지닌 전통적 갈등해결방식의 부활을 통해 인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화해를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르완다의 시민에 의해 그리고 시민중에서 선출된 비직업 법관으로 이루어진 Gacaca 법원을 통한 종족학살사건 처리이다. 참여적 사법과 화해의 정신에 기초한 이 전통적 갈등해결시스템의 목적은 유죄를 결정하거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사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접근법은 종족학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르완다 국민을 화해시키고 국가의 안정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회복적 사법의 유망성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실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분들(주로, 조정, 협의, 서클 모델)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영미계 국가 중심으로 많이 행해졌다³⁵⁾. 회복적 실무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도, 당사자들의 절차 만족도, 절차의 공정성 정도, 합의율, 합의이행율, 재범 감소율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평가연구는 전체적으로 이 처분들이 사건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에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고전적 처분들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공정한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⁶⁾.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학설 혹은 평가연구에 의해 제기되는 회복적 사법의 내재적 한계 혹은 위험들을 간

35)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대한 외국의 평가연구들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는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8), 앞의 책, 56-79면 참조.

36) Cario(R.), 앞의 책, pp. 138-143; Pignoux(N.), 앞의 책, pp. 378-380 참조.

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가해자를 위한 도구화, 형식 부재에 의한 참가자들의 기본권 침해, 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의 문제, 사회통제망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³⁷⁾.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회복적 사법에만 국한된 문제들이 아니라 전통 형사사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며, 또한 법적 수단을 통한 절차적 보장책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전통 형사사법을 보완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유망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회복적 사법이라면,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회복적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회복적 경찰활동

1. 의의

오늘날 더 이상 경찰의 업무는 형사고소를 기록하고 범죄인을 체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평화유지 활동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찰은 시민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결국, 범죄척결사(crime fighter)로 대표되는 전형적 경찰역할 모델에서 평화유지자(peacekeeper)로서의 경찰역할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³⁸⁾. 이러한 경찰상의 전환에서는 조정, 협상, 화해 등이 경찰업무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

37) Cario(R.), 앞의 책, pp. 143-146; Pignoux(N.), 앞의 책, pp. 380-381 참조.

38) 전통적 경찰활동 모델에 익숙해있는 많은 경찰관들은 이런 유형의 활동들을 진정한 경찰업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회복적 사법이 경찰활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이다. 이 용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Bethlehem 경찰이 주도한 소년범에 대한 가족 집단협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Paul McCold와 Benjamin Wachtel⁴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있다⁴¹⁾.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착된 개념도 아니고 이에 대한 확립된 개념정의도 없지만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에 기초한 경찰활동의 철학 혹은 원칙들”로 이해할 수 있다.

2. 특징과 원칙

회복적 경찰활동의 특징과 원칙에 대해서는 영국 Thames Valley 경찰관서장이었던 Mel Lofty의 설명⁴²⁾을 참조할만하다. 그에 따르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하나의 특정한 실천 혹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범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범이 범죄에 연관된 사람들, 즉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며 범죄에 의해야기된 피해를 회복하고 당사자들을 화해시켜야 한다는 회복적 사범의 관념에 기초한 철학이다. 통합, 개방성, 존중, 공정한 절차 등과 같은 회

39)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2009, 앞의 책, p. 8.

40) McCOLD(P.), Wachtel(B.), Restorative policing experiment : The Bethlehem Pennsylvania Police Family Group Conferencing Project. Pipersville, PA: Community Service Foundation, 1998.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1) Shapland(J.),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in the context of community policing,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앞의 책, p. 120.

42) Lofty(M.), Restorative Policing, “Dreaming of New Reality,”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ferencing Circles and other Restorative Practice, August 8-10, Minneapolis, Minnesota, 2002, www.iirp.org/library/mn02/mn02_lofty.html; 차훈진, 경찰의 회복적 사범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05, 239-240면 참조.

회복적 사법의 원리들은 경찰활동이 ‘경찰강제력’(police force)에서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쉽게 안착될 수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 모델에서 강조되는 경찰강제력이 즉각적인 대응, 법집행에 초점, 군사문화, 위계질서, 비난의 문화, 과거를 봄, 전통에 의존, 엄격한 규칙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서비스경찰은 문제해결, 지역사회의 안전, 개인적 책임과 접근가능성, 오류를 인정하고 배움, 미래를 내다봄, 개혁을 장려함, 피해자, 증인, 가해자의 인권 등에 초점을 둔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와 공동체를 문제해결에 참여시킴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감소, 공동체내 갈등 감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위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기술·전략일 수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찰력 보다 경찰서비스 정신을 지지하는 경찰의 문화적·행동적 변화를 촉진하는 자극제라고 할 수 있다. Bazemore와 Griffiths가 회복적 경찰활동을 범죄대응과 관련한 체제적 개혁(systemic reform)을 위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치관의 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⁴³⁾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기법을 활용한다. 둘째, 시민, 공동체, 협력자를 참여하게 한다. 셋째, 조직·세분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권화와 지리적·조직적 의사결정을 장려한다.

3. 지역사회경찰활동과의 관계

회복적 사법의 특징과 원리를 잘 들여다보면, 이 접근법이 경찰에 전혀 낯선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회복적 사법은 공공의 안전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역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43) Bazemore(G.), Griffiths(C.), Police reform, restorative justice and restorative policing,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4, No. 4, 2003, pp. 336-338.

을 할 수 있도록 범죄문제와 관련한 국가(정부 혹은 형사사법)와 지역사회의 역할 재분배를 요구한다. 즉, 형사사법은 질서유지의 역할을, 지역사회는 사회평화 유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이처럼, 범죄로 인한 갈등해결에 있어 지역사회의 능동적 개입을 강조하는 한, 회복적 사법은 범죄해결과 예방에 시민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⁴⁵⁾.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두 범죄문제에 대해 시민참여와 개입, 협력관계, 문제해결, 공동책임 등 지역사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⁴⁶⁾. 지역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범죄, 피해, 갈등에 대한 비공식적 대응에 있어서 시민과 지역사회집단의 기술과 신뢰를 동원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양립가능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미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기법을 그들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사법(community justice) 그리고 특수하게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연관된 일부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지만, 국제적 운동으로서 회복적 사법은 앞의 두 접근법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규범적

44) Van Ness(D.), Strong(K.), Restoring Justice (1997), Cincinnati OH : Anderson Publishing, fourth edition. 2010, pp. 35-36.

45) 공동체 전통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발전된 영미권 국가에서 회복적 사법이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 회복적 사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Nicholl(C.),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 Exploring the links for the delivery of a balanced approach to public safet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1999; 석청호, 회복적 사법과 경찰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제10권 제1호, 2008, 131-156면 참조.

46) 석청호, 앞의 논문, 153면.

이론을 통해 작동되고 새로운 개입전략과 실천을 우선시하고 있다⁴⁷⁾. 특히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의 처벌과 처우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개입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 주창자들은 문제해결 지향적 그리고 공동체 지향적 전략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찰 전략의 무언의 일차적 목적, 즉 모든 범법자를 전통적 형사사법절차로 회부하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우보다는 범죄의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은 국가와 범죄자의 일면적 관계로 특징지어 지는 공식적 형사절차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참여시키는 비당사자주의적 절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는 범죄자를 개선시키고, 사건당사자들의 문제해결의 주역이 되게 함으로써 범죄에 의해 훼손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축적이다. 비록 이러한 접근법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불완전하게 다루어졌거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않았다⁴⁸⁾. 예를 들면, 사건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개입없이 공동체를 예방과 공공안전활동에 관여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과 문제해결에 대한 많은 접근법들이 존재한다. 또한 비록 비공식적으로는 회복적 결과를 가져 오게끔 하는 절차에 사건당사자들을 관여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회복적 의무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목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기회

47) 지역사회경찰활동과 회복적 사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Bazemore(G.), Griffiths(C.), 앞의 논문, pp. 336-338 참조.

48) 이와 관련해서 Bazemore와 Griffiths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더 일반적으로는 경찰개혁에 있어 다음의 논리적 단계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Bazemore(G.), Griffiths(C.), 앞의 논문, p. 344.

를 제공하고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나 청결운동(clean-ups) 등과 같은 조직화된 집단행사에 지역사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소송단계에서 전통적으로 법원과 사법전문가(검사, 변호인 등)의 영역이었던 비공식적 제재와 개별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 시민들에게 의사결정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4. 회복적 사법과 경찰의 역할

만일 회복적 사법의 진정한 의미가 갈등해결을 관련 당사자와 지역사회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경찰의 일차적 역할이 필수적일 수 있다⁴⁹⁾. 그렇다면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 경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언급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특히 회합프로그램)에 사건 회부, 회복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찰기관 내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자 혹은 촉진자로서 참여,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소집 혹은 참여, 경찰 자체 회복적 프로그램 설계 및 운용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회복적 경찰활동에 있어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찰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경찰관의 좀 더 비공식적 활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찰관이 거리, 가정, 학교 혹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회복적 사법의 원리를 활용할 때, 회복적 해결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이러한 실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거리 수준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공식적이고 고비용의 형사 절차 혹은 여타 다이버전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다. 경찰관이 회복적 목표와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해결을 좀 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사건을 공

49) 석청호, 앞의 논문, 149면.

식 프로그램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⁵⁰⁾.

50) Bazemore and Griffiths, 앞의 논문, p. 338.

제3장 외국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대응 사례

회복적 사법 실무는 각 나라의 법적·문화적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회복적 사법이 발전된 나라에서 실무에 활용된 회복적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비판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고 결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각 나라의 실정법과 형사사법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실무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 대응은 주로 회복적 사법의 실무 모델중 하나인 회합 프로그램의 운영과 연관되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제1절 영미권 국가

1. 호주

가. Wagga Wagga 경찰회합모델

이 모델은 호주의 최초의 회복적 사법 모델로서, 1991년 New south Wales의 Wagga Wagga 마을의 주민과 경찰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합모델을 수정한 것이고, John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주기 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⁵¹⁾에 기반한

51) Braithwaite(J.),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국식 경찰활동국가의 공식적 경찰 경고(cautioning)을 확장한 것이며, 문제해결중심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호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소년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합모델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Wagga Wagga 경찰회합(police-led conferencing)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호주 수도권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와 Northern 지역 두 군데이다⁵²⁾.

Wagga Wagga 회합모델은 뉴질랜드 가족집단회합과는 달리 전적으로 경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복경찰이 회합의 조직 및 조정을 직접 담당한다. 회합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회합은 경찰서에서 열리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 및 친구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중요한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다. 주선자 및 조정자로서 경찰은 소년범죄자들과 그들의 피해자들이 그들 각자의 가족들 및 지원자들과 함께 범죄행위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 합의에 도달하도록 장려한다. 경찰회합의 절차를 보면, 먼저 가해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범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범죄로 인해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그 지원자들이 범죄에 의해 야기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결과를 말할 기회를 가진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가족과 그 지원자들이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해자와 그의 친지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비

52) 도입 초기에는 호주의 Tasmania, Queensland와 같은 다른 주들에도 Wagga Wagga 모델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경찰주도 회합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었고, 청소년인권옹호 단체, 소년사법부, 법무부 등에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경찰을 조정자로서 충분히 독자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경찰주도 회합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되었다. 이후 대부분 지역 회합프로그램에서 회합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해 조직 운용되고 있다. Hoyle(C.), Policing and restorative justice, in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2007, 앞의 책 pp. 292-293 참조.

난되지만 범죄행위자 그 자체는 비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된다. 주선자가 합의문건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참가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의 직후 가벼운 음식물이 제공된다. 합의가 도출되면 협의 문건이 작성된다. 해결책은 경찰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당사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산출된다. 이 해결책에는 사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해자의 사회재통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합의 성공은 가해자로 하여금 전통적인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경찰회합은 용서와 치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식적인 대응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또한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보다 넓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그들 자신의 공동체 문제들을 적절하게 언급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⁵³⁾.

호주의 Wagga Wagga 경찰회합모델은 회복적 사법의 관념을 분명하게 통합한 소년범죄를 다루는 유망한 방법으로서, 전 세계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모델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찰회합프로그램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 재통합적 수처심주기 실험

호주에서는 경찰회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Wagga Wagga 모델을 변형·발전시킨 수도권 지역 경찰회합 프로그램⁵⁴⁾을 평가한 호주국립대학의 재통합적

53) Wagga Wagga 모델에 관해서는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90-96면; 원혜옥(2006), 앞의 논문, 316-317면 참조.

54) 호주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유형에 경찰회합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예를 들면, Canberra 회합은 사고나 피해자가 없는 성인의 음주운

수치심주기 실험연구(Canberra Reintegrative Shaming Experiments: RISE)⁵⁵⁾에 주목할만하다. 이 연구는 호주연방경찰의 회합 프로그램의 영향을 전통적 형사사법절차와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한 집단과 회합 절차에 참여한 집단을 재범율, 절차의 공정성, 피해자의 만족도, 비용 등의 척도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4가지였는데, 모든 연령대의 음주운전, 18세 미만소년이 범한 개인에 대한 재산범죄, 18세 미만 소년의 상점절도, 30세 미만의 청년의 폭력범죄가 그것이다. 연구결과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회합은 대체로 모든 측면에서 전통 형사사법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은 회합을 경험한 범죄자들이 법원을 통해 처우된 범죄자에 비해 약 38% 정도 더 낮았다. 회합에 참여한 4/5 이상의 피해자는 그 결과로서 피해회복을 받았다고 느꼈지만, 법원 과정의 피해자는 1/10에 불과했다.⁵⁶⁾

2. 미국

가. 균형적 ·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미국은 1970년대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경찰중심적 방안(Police-based initiatives)을 포함하여, 조정, 회합, 서클모델들이 각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소년사법체계에 결합되면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1970년대에 발족된 미법무부의 소년사법 및 범죄예방국

전사건에 적용되었다. Canberra의 소위 음주운전 회합에 대해서는 김은경(2004), 앞의 책, 56-57면 참조.

55) 이 실험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Sherman(L.W.), Strang(H.), Barnes(G.C.), Braithwaite(J.), Experiments in Restorative Policing : a Progress Report on the Canberra Reintegrative Shaming Experiments (RISE), 1999, www.aic.gov.au/rjustice/australia.htm.

56) 김은경(2004), 앞의 책, 54-55면.

(OJJDP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은 소년사범모델을 위한 통일적 원칙과 철학으로서 ‘균형적·회복적 사법(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개념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소년사법에 있어 제3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⁵⁷⁾. 균형적·회복적 사법이란 균형잡힌 접근계획과 회복적 사법 철학에 근거하여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을 보아 발전시키려는 일종의 통합모델을 말한다. 균형적·회복적 사법의 세가지 핵심요소는 1)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 2) 가해소년이 지역구성원에게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회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가치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개발(Competency Development), 그리고 3)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의 회복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해자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소년사범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안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소년사범모델은 지역사회 사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이것은 지역사회 기관들이 자체적인 비행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소년사범체계가 지역사회지원체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나. Bethlehem 경찰 가족회합 프로젝트

1995년 Bethlehem(Pennsylvania) 경찰서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지역사회봉사재단(Community Service Foundation)은 미법무성의 재정 지원하에 18개월에 걸쳐 회합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⁵⁸⁾. 대인범죄(75건)와 재산범죄(140건)로 체포된 초범 소년범들이 무작위로

57) 김은경(2004), 앞의 책, 71-74면, 원혜옥(2006), 앞의 논문, 313-314면 참조.

58) 이 실험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McCOLD(P.), Wachtel(B.), Restorative policing experiment, : The Bethlehem Pennsylvania Police Family Group Conferencing Project. 앞의 책; 차훈진(2004), 앞의 논문, 245-247면 참조.

전통 형사절차 혹은 회복적 회합 절차에 할당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피해자들, 가해소년들, 그들 각자의 가족들,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고, 회합과 전통형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 전형적인 미국경찰관들이 적정절차의 원칙과 회복적 원칙에 따라 회합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가?
2. 경찰관들의 회합에의 참여가 그들의 태도, 조직문화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가?
3. 회합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재범률을 감소시키는가?
4. 피해자, 가해소년 그리고 지역사회가 경찰 주도의 회복적 대응방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5. 회합의 도입이 사건계류중인 소년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6. 경찰이 주도하는 회합이 기존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다른 회복적 사법 실무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미국경찰관들은 그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관리된다면 적정절차의 틀에서 회복적 원칙에 맞게 회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회합이 경찰관들의 태도, 조직문화 그리고 역할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합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인식이 의미있게 증가했으며 범죄통제에 초점을 둔 전통적 성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회합이 특히 대인간의 폭력사건의 경우, 갈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재범률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보다 재범률은 회합에 참여한 소년

범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경찰이 주도하는 회합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96%가 자발적으로 회합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했으며, 92%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합프로그램을 권하겠다고 응답했고, 94%가 자신이 다시 회합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답했다. 가해자와의 만남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93%였으며, 회합분위기가 친밀했다는 비율은 94%, 가해자가 사과한 비율은 96%, 회합프로그램이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1%였다. 다음으로, 가해소년 중 92%가 자발적으로 회합에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92%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합프로그램을 권하겠다고 답했으며, 94%가 회합프로그램에 다시 응하겠다고 답했고 피해자와의 만남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100%, 회합분위기가 화기에애했다는 비율은 96%였다. 마지막으로 회합에 참여한 부모나 친지의 만족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피해자, 가해자, 그들의 가족 및 지원자들은 회합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회합 과정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 대부분이 경찰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다섯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실험연구기간 동안 회합이 전반적인 소년범죄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년범들이 체포된 이후에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향후 범죄양상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참여자들이 경찰이 주재하는 회복적 회합이 다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고전형사사법체계보다 더 만족스럽고 공정하다고 느꼈다. 참여도와 합의이행율 역시 다른 회복적 접근법들에 비해 높았다. 또한 경찰회합은 조정 프로그램보다 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회합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큰 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초기 훈련비용 외에 별다른 부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Behtlehem project는 이후 북미에 걸쳐 많은 다른 경찰관서에 의해 도입되었고, Indianapolis와 캐나다의 Regina에서는 폭넓은 긍정적인 평가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⁵⁹⁾.

3. 영국

가. 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발전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Crime and Disorder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은 회복적 처분들을 전형적으로 경찰, 검찰 또는 판사의 재량권의 실행으로서 소년사법절차의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다. 서비스는 전형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위치하거나, 비영리 사회단체 혹은 종교관련 단체 조직에 의해 제공된다. 회복적 사법 처분들은 대체로 소년사법의 전문담당자만으로 기능할 수 없는 지역사회 조직체들이 지닌 자원들 및 지원에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다. 회복적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업주 및 변호사, 청소년육성관련단체와 같은 사회화 기관의 핵심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⁶⁰⁾. 이후, 1999년에는 소년사법 및 범죄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이 제정되었고, 새로운 소년사법체도를 지방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이 창설되었고, 소년범죄대응팀의 작업을 국가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가 설립되었다. 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은 공식적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또는 밖에서 사법절차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실행되고 있는 데,

59) O'Mahony(D.), Doak(J.), Restorative Justice and Police-led Cautioning Practic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2009, 앞의 책, p. 147.

60)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8), 앞의 책, 53면.

대표적인 프로그램들로는 위탁 명령(Referral Order), 피해회복 명령(Reparation Order), 조정(UK Mediation) 및 회합(Conferencing), 지역 사회조정서비스, Peer Monitoring 등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에 대한 회복적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⁶¹⁾,

한편, 영국 회복적 소년사법의 발전에 있어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경찰의 회복적 실천은 1994년 Thames Valley 경찰에서 호주 Wagga Wagga 모델에 입각한 경찰이 이끄는 회합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Canberra 경찰과 영국의 Thames Valley 경찰의 회합 프로그램은 학술적으로 큰 국제적 관심을 일으켰으며, 회복적 사법의 옹호자인 각국의 경찰책임자 등 실무자들 역시 이 프로그램의 소개와 저서 출판, 정책결정자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공론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 영국의 다른 지역의 경찰기관들, 특히, Nottinghamshire와 Surrey 경찰은 자체적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했고, Northern Ireland 경찰은 시험적인 회복적 사법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회복적 사법을 수용한 뒤 2004년에는 상대적으로 주로 경미한 범죄행위로 체포된 초범 소년에 대한 경찰의 회복적 경고의 전국적 시행을 공포하였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뉴질랜드와 호주 대부분의 주정부 그리고 입법가와는 달리 영국 노동당 정부는 Thames Valley 경찰에서 실천된 것과 같은 경찰이 이끄는 회복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사실이다⁶²⁾.

나. Thames Valley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61) 김은경(2004), 앞의 책, 103-119면.

62) Hoyle(C.), 앞의 논문, pp. 293-294.

영국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리 널리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Thames Valley 경찰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큰 테두리 안에서 회복적 사법을 경찰활동에 접목·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⁶³). Thames Valley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당시 Charles Pollard 경찰관서장(chief constable)의 선구적 노력에 크게 힘입었다. 그는 전통 형사사법체계를 비판하면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원리를 적극 수용해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경찰관서를 운영하고자 했다. 그는 회복적 사법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경찰활동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변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그의 주장은 당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1997년 Thames Valley 경찰은 회복적 사법을 경찰활동을 이끄는 주요 전략으로 공식 채택하게 된다. Thames Valley 경찰은 회복적 사법 상담소(Restorative Justice Consultancy)를 설립, 이를 통해 경찰 교육, 회복적 프로그램의 실행 지원, 실행된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소년법 처우와 관련해서 Thames Valley 경찰에 의해 수행된 대표적인 제도로는 회복적 회합(Restorative Conferencing)을 통한 회복적 경고(Restorative Cautioning)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기소대체절차로서 고안된 경찰 다이버전적 처분의 일종이다. Thames Valley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험했으며, 이와 관련된 경찰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1998년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에 의해 회복적 경고가 공식화되었다⁶⁴). 가해소년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전통적인 경찰 경고와는 달리, 회복적 경고는 우선, 자신의 행위에 대해

63) 영국 Thames Valley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에 관한 이하 내용은 O'Mahony(D.), Doak(J.), 앞의 논문, p. 142 이하; Hoyle(C.), Restorative Justice Policing in Thames Valley,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앞의 책, pp. 189-203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64) 그러나 이 법에서 회복적 경고라는 용어는 건책(reprimands)과 최후 경고(final warning)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 처분들은 소년법 뿐만 아니라 성인법 모두에 적용된다.

수치를 느끼게 하지만 그들을 공동체로 재통합을 촉진하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면서 범죄와 범죄의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 처분은 가해 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피해회복과 사과 등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공동체와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소위 ‘회복적 사법 진행자(Restorative Justice co-ordinators)’로서 경찰관들이 회복적 경고를 위한 회합을 조직하고 회합에는 어느 회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해자, 가족 등 지원자 등 범죄로 영향받은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경찰은 종종 범죄로 야기된 피해와 이를 회복시킬수 있는 방법을 잘 논의하게 위해 준비된 원고를 사용한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 절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시간과 자원 면에서 경찰관들에게 엄청난 실질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절차이다. 그럼에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1,915건의 회복적 회합과 12,065건의 회복적 경고가 이루어졌다⁶⁵⁾. 피해자가 회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Thames Valley 경찰의 회복적 경고에 관한 옥스퍼드 대학 팀 평가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 가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원자들 모두 일반적으로 만족하였고 그들이 공정하게 처우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2/3 정도의 피해자들과 가해소년들은 만남이 가해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회복적 개입의 특별히 중요한 목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회복적 회합을 통해 갈등이 종식된 것처럼 느꼈으며, 기분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4/5가 모임을 갖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3 정도의 가해소년들이 회복적 경고에서 원상회복

65)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철학적 이유로 경찰에서 회복적 경고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Hoyle(C.), Restorative Justice Policing in Thames Valley,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앞의 책, p, 196 이하 참조.

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 합의에 이르렀으며, 1년 사이 세 건을 제외한 대다수의 합의내용이 완전하게 이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팀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연구팀은 회복적 경고가 어떤 참가자들을 배제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예를 들면, 이전의 범행과 관련된 질문이나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 등)을 하는 주선자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때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면, 2/5 가량의 가해소년들은 자신들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일부 경찰관들은 가해자로 하여금 사과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일부 경찰관들은 논의를 지배하려고 하고 일방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전체적으로 보아 회복적 경고가 전통적인 경찰 경고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전을 대표하였으며 재범감소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Thames Valley 경찰은 회복적 경고 이외에도 공동체의 다양한 부문간의 갈등해결(예를 들면, 밤늦게 상점 주위를 배회하는 청소년들과 주변 주민들간의 모임을 통한 갈등해소)을 위한 공동체 회합(Community Conferences), 직장·가족·학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적 갈등해결(Restorative Conflict Resolution) 프로그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용가능한 행위협약(Acceptable Behavior Contracts) 등을 실행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기법을 시민의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건과 경찰내부 징계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Thames Valley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와 관련된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없는 분쟁해결에도 적용되었다.

4. 캐나다

가. 왕립기마경찰의 회합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제도는 주로 Mennonite 교단의 전통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조정모델과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적 갈등해결방식에 기반한 서클모델 두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세 번째 모델인 회합은 덜 심각한 소년범죄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⁶⁶). 이것은 호주의 Wagga Wagga 모델에 영향을 받은 가족집단회합의 일종으로 지역사회사법포럼(Community Justice Forum: CJF)이라고 불렸다. RCMP는 이 접근법이 자신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1997년 초반에는 전국에 걸쳐 몇 개 지역에서 ‘훈련자를 위한 교육과정’(train-the-trainer)을 운영하면서 CJF를 공식적 제도로 인정하였다. 총 50여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RCMP 및 다른 지역 경찰관서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RCMP는 그들의 역할을 ‘촉진적인 것’(catalyst)으로 규정하고 싶어 했다. 즉, RCMP는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훈련자 혹은 CJF 진행자가 되게끔 교육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CJF를 이용하여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1998년 말경, RCMP는 약 1,700명을 교육시켜 CJF 모임을 주관하게 했다. CJF를 수행한 진행자들은 30 가지 이상의 다양한 범죄유형을 다

66)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의 회합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Chatterjee(J.), Elliott(L.), Restorative Policing in Canada: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Community Justice Forums and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4, No. 4, 2003, pp. 347-359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루었으며, 약 79%가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487명의 CJF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조사결과,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만족도 면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나. 새로운 소년사법과 사법외적 처분

캐나다 경찰에서는 낙인이론에서 주목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소년범죄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고 회복적 사법을 바탕으로 소년범죄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통합하는 방법으로 사법외적 처분(extrajudicial measures)을 실행하고 있다⁶⁷⁾. 이 처분은 기존의 소년범죄자법(Youth Offenders Act, 1984)을 폐지하고 2003년 4월에 제정된 새로운 소년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에 근거하고 있다. YCJA는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실행되어 오던 다양한 회복적 소년사법 개입들에 대하여 분명한 관심과 원칙을 결합시켜 그 입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별히 사법외적 처분들을 보다 중요한 사법절차과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YCJA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덜 심각한 소년범죄에 대한 법원 절차에의 회부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비사법적 대응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범죄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비사법적 수단을 통한 조기개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외적 처분에는 훈방(Taking no further action), 주의(Warnings), 경찰경고(Police Cautions), 검찰경고(Crown cautions), 지역사회 프로

67) 캐나다 경찰의 사법외적 처분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Chatterjee(J.), Elliott(L.), 앞의 논문;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8), 앞의 책, 80면 이하; 최응렬·경우일·차훈진,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캐나다 경찰의 비사법 처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7권 제1호, 2006, 5-46면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램이나 기관에의 위탁(Referrals, 소년의 동의 필요),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 소년이 책임을 인정하고 Attorney General이 기소가능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제재를 인정할 때에만 가능) 등 5가지가 있는데, 기소전 부터 형선고 이후 단계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걸쳐 소년범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찰과 검사는 사건을 사법외적 처분을 통해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경찰단계에서 사법외적 처분의 절차를 살펴보면, 경찰관이 소년을 체포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방, 주의, 경고, 위탁 등 네 가지 사법외적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이 때 경찰관이 네 가지 처분들 중 하나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선택한 처분을 부과하면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는 종결되고 그 소년은 사회로 복귀한다. 만약 경찰관이 위 네 가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사법외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위탁 혹은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YCJA는 또한 회복적 사법 개입으로서 회합(Conference)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section 19에 따라 회합은 ‘정책결정자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된다. 회합은 다양한 형사사법 단계에서 경찰, 검사, 판사 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법내의 다른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 경찰관은 사법외적 처분을 부과하기 전에 소년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회합을 소집하거나 회합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소년범죄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보다 적절한 처우를 위해 의견을 조정한다. 회합의 참여자들은 상황과 형사절차 단계에 따라 가해자인 소년과 피해자, 그 부모, 소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웃주민,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

다양하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는 자발적인 참석이 요구된다. 회합은 주로 경찰관이 특정 소년에게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사법외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회복적 기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적 조언을 제시하는 전문가 회의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YCJA의 시행으로 캐나다 경찰은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에서 소년범죄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경찰의 소년범죄 대응 전략은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기타 사회 및 소년 단체들과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소년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전환 처우 및 회복적 사법 전략을 이용한 소년 선도예방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때에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과 연계하고 있다.

제2절 유럽 국가

1. 벨기에

벨기에 북부지역 플랑드르(flanders) 지역경찰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웃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웃간 조정(neighbour mediation), 소범죄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관련 경찰조정(police damage mediation), 형사사법체계, 지역경찰조직 그리고 평화법원간의 협력에 기반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적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Project about relational problems: Prolela),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Family Group Conferences) 등이 있다⁶⁸⁾.

이 중 소년범과 관련된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주로 가족집단회합과 관련된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협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Hergo⁶⁹⁾라고 불리운다. Hergo는 90년대 초반부터 비공식적으로 실행되어 오다 2006년 5월 15일 수정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공식화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Hergo를 회복적 사법의 제공으로 보고 있다. Hergo는 소년법원의 수준에서 법관에 의해 제공되며,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Hergo에 의한 사건 처리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면 회합은 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경찰이 아닌 다른 독자적 기관)에 의한 소년의 부모와 피해자의 초청으로 시작되는데, 목적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본 회합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본 회합에서는 조정자 혹은 공동조정자 외에, 가해소년, 피해자, 가해소년의 변호인, 소년법원의 상담사, 부모, 친구 등 가해소년과 피해자의 지지자, 경찰 등이 참여한다. 이처럼 경찰은 회합에 제3자적 입장에서 참여하며 그의 역할은 보다 상징적인 것으로, 회합의 전 과정에서 공공질서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상정된다. 회합절차에 경찰의 존재는 모임이 단순한 비공식적인 잡담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해소년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역시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회합의 절차는 다른 회합 모델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경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① 회합 초기에 범죄사실을 요약해서

68) Vynckier(G.), A comparative view on the role of the police in different restorative practices in Flanders,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앞의 책, p. 25 이하 참조.

69) 이 용어는 네덜란드어인 Herstelgericht Groepsoverleg의 약어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작업(Group work aimed at restoration)을 의미한다. Vynckier(G.), 앞의 논문, p. 28 참조.

읽어주고, ② 가해소년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를 모니터하고, ③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회복방안이 비례적인지 아닌지를 모니터하는 것이다. 벨기에에서 수행된 회합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경찰을 회합에 참여시켜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했다. ① 경찰의 존재가 안전장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회합을 중대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②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회합은 소년범들과 경찰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소년들은 경찰의 존재가 유용하다고 답했다⁷⁰⁾.

2. 네덜란드

가. 경미 소년사건의 HALT 위탁

네덜란드에서 소년범과 관련된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개입은 1981년 Rotterdam 지역의 실험을 통해 시작된 HALT(tHeALTERNative, 대안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식 약어) 프로젝트이다⁷¹⁾. 이는 조정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전환처우적 성격을 띠고 있다. HALT에 의한 사건해결은 중하지 않는 범죄로 경찰에 인지된 가해소년에 대한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HALT 사무소가 있는데 검찰국 지휘를 받고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HALT를 통한 소년에 대한 제재는 사법외적 처분으로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의

70) Vanfraechem(I.), Restorative policing: in pursuit of principles, in Flanders,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앞의 책, pp. 51-52 참조.

71) 네덜란드의 HALT 제도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Van Stokkom(B.), Moor(L.G.), Pass the buck: Restorative policing in the Netherlands,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앞의 책, pp. 108 이하; 김은경(2004), 앞의 책, 157-164면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형태를 띠지만 피해배상적(reparative) 요소도 갖고 있다⁷²⁾. 이 제재들에 기저하고 있는 철학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첫째, 교육적으로 건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즉각적인 해결이어야 하며, 셋째, 보상과 사과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하며, 넷째, 부모의 개입을 요구한다.

경찰은 12세에서 18세까지의 초범인 가해소년을 HALT 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위해서는 ① 사건들이 HALT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사건이어야 하고, ② 소년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야 하며, ③ 소년이 HALT를 통한 사건해결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반드시 원상회복적 요소를 포함한 HALT 제재들의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스스로가 회복적 사범의 발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Halt 사무소는 소년이 제재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행하면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사건은 다시 경찰에게 넘겨진다. 범죄행위 및 HALT에 의한 사건해결은 범죄기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 : 배상청구 해결

HALT가 주로 가해자에 초점을 둔 회복적 방안이라면, 배상청구 해결(claim settlements)는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⁷³⁾. 네덜란드 정부의 Terwee 지침 이후로, 경찰과 검찰국은 형사절차에서 가급적 조기에 배상 해결(damage settlements)을 수행해야만 했다. 2004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for Victim Care)⁷⁴⁾ 이후, 배상청구 해결

72) 상당수의 사건이 HALT 사무소에 의한 제재 혹은 해결로 인해 다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23,000건 이상의 HALT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HALT는 제도화된 회복적 사범 혹은 회복적 경고 프로그램의 네덜란드식 버전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Van Stokkom(B.), Moor(L.G.), 앞의 논문, p. 108.

73) 배상청구해결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Van Stokkom(B.), Moor(L.G.), 앞의 논문, pp. 110-112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74) 이 지침에 의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역할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찰은 올바르게 개인 특성에 맞게 피해자를 처우해야 한다. 둘째, 경찰은 피해자에게 정보

(claim settlements)는 명백한 경찰의무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배상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 없는 간접적 조정(indirect mediation)과 관련이 있다. 경찰에 의한 배상 청구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가해자가 자백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가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물질적 손해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경찰이 배상청구 해결에 개입하는 정도가 다르며, 경찰 뿐만 아니라 직업 조정가 혹은 검찰국 소속 중앙 배상 조정가가 배상청구 해결을 맡을 수 있다. 경찰조정자에 의한 배상청구 해결은 조정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보통 경찰관들은 조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배상청구 해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상청구 해결은 주로 성인범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경찰은 소년과 관련해서 배상청구 해결을 HALT 사무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HALT 사무소는 가해소년으로 하여금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예를 들면, 피해당사자 소유의 벽에 한 스프레이 낙서의 제거).

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응 : FF-Kappe

공중에 해를 끼치는 행위(nuisance behavior)는 특히, 이웃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대한 대응으로 2000년대 후반 행위 금지명령(behavioural injunctions, 예를 들면 공중에 해가 되는 심각한 행위에 대한 금지)의 일종인 이른바 정상행위 협약(act-normal contract)이라는

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배상청구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Van Stokkom(B.), Moor(L.G.), 앞의 논문, p. 110. 참조.

접근법을 도입하고자 했다. 2006년 시험 프로젝트가 FF-Kappe라는 이름하에 Delfshaven(Rotterdam)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로 영국의 수용가능한 행위협약(acceptable behavior contract)에 기초한 것이었다⁷⁵⁾. 이 프로젝트는 심각한 nuisance를 일으키는 그리고 때로는 법에 의해 처벌가능한 행위에 가담한 소년을 겨냥한 것으로 행위 지도, 지원 그리고 처벌 위협이 혼합된 것이었다. 소년은 스스로 좋은 행위를 하겠다(예를 들면 특정한 거리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소위 ‘의지 표명서(declaration of intent)’에 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이 협약은 정확히 어떤 유형의 행위가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도는 부모와 소년 모두 협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다. 처분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로는 ① 소년이 행위에 중독되지 않고 ② 소년이 학교에 출석하고 ③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④ 협약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입을 알고 있는 부모들/보호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FF-Kappe와 경찰의 역할은 소년의 행위에 대한 감독에 있다. 만일 경찰이 소년이 협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면, 시장은 1년 동안 소년으로 하여금 반사회적 그리고/혹은 공공에 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동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75) FF-Kappe에 관한 이하 내용은 Van Stokkom(B.), Moor(L.G.), 앞의 논문, pp. 109-110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FF-Kappe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기 힘들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영어로는 cut it out에 해당하고, 의미는 화가 나있고 공격적이거나 지배적 성격을 가진 사람을 calm down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4장 한국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 대응방안 모색

제1절 경찰의 소년범죄 대응 현황 및 문제점

1. 소년범죄 실태

소년범죄⁷⁶⁾는 <표 5>에서 보듯이 10만 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증감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이를 말하기는 힘들다. 2000년 143,018명으로 정점을 보이고 20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감소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활동으로 2012년에는 소년범죄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15.3% 감소하였다.

<표 5> 최근 10년간 소년범 현황

(단위 : 명)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43	107,018	90,694
형법범	61,577	62,008	66,740	80,008	75,331	86,087	74,368	59,706	73,652	74,483
특별법범	25,284	21,469	23,888	35,653	47,713	31,971	20,494	26,937	33,366	16,211

76) 아래의 통계자료는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과 촉법소년(형법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만 해당되고 우범소년(형법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제외된다.

※ 소년법 개정에 따라 '08년 이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08년 이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임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2013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소년범을 유형별로 보면, 형법범이 82.1%, 특별법범이 17.9%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전체범죄 중 절도(36.1%)와 폭력(25.1%)이 대다수(6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전년도와 대비해서 절도는 29.2%, 폭력은 13.7% 감소하였다. 2012년 대비 형법범은 소폭(831명, 1.1%) 증가한 반면, 특별법범은 대폭(17,155명, 48.6%) 감소하였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은 총 3,081명(3.4%)으로 2012년 대비 13.6% 감소하였지만, <표 6>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계속 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흉포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최근 5년간 소년범 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특별법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9년	118,058	2,786	23	2,100	454	209	43,549	30,241	41,482
'10년	94,862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29,787
'11년	86,643	3,202	12	1,143	1,881	166	32,707	23,797	26,937
'12년	107,018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33,366
'13년	90,694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32,055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5.5%이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11년에는 4.4%였고, 2012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5.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소년범 구성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⁷⁷⁾. 2012년에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대응이 수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7>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비율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전체범죄자	소년범죄자	구성비율(%)
2008	2,472,897	134,992	5.5
2009	2,519,237	113,022	4.6
2010	1,954,331	89,776	4.5
2011	1,907,641	83,068	4.4
2012	2,117,737	107,490	5.1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보면, 우선 2008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의 연령이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14세 미만 소년범이 크게 감소하였다. 14에서 15세 소년범 역시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28.8%가 감소하였고, 소폭 증가하였던 16세 이상 소년범도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2.6% 감소하였다⁷⁸⁾. 한편 대검찰청 범죄분석(2013)에 따르면, 2012년 연령별 분포는 16세 소년범이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2.5%, 18세 20.9%, 15세 19.5%, 14세 12.1%, 14세 미만 0.8% 순이었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14세 이하 소년범의 비율은 2011년도와 비교할 때 2배 가량 증가하였다(6.6%→12.9%)고 한다⁷⁹⁾.

77)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3, 354면.

78) 한상민,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9면.

79) 여성가족부, 앞의 자료, 356면.

<표 8> 연령별 소년범 현황

(단위 : 명)

구 분	'07	'08	'09	'10	'11
계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14세 미만	2,602	5,547	2,615	621	318
14-15세	37,256	45,034	41,607	29,676	23,288
16-17세	41,473	50,766	51,345	43,504	43,566
18-19세	34,330	21,697	22,491	21,061	19,499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됨으로써, 18-19세 항목은 18세만 산출

※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12

마지막으로 소년범죄 재범률 현황을 보면, 2001년 36.8%를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는 30%대 내외를 유지하면서 소폭 감소해오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에는 36.9%에 이르렀다⁸⁰⁾. 이는 가해자 3-4명 중 한 명은 비행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소년범 재범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전체 소년범	131,059	115,210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18,058	118,058	94,862	86,643
재범소년	48,216	41,749	33,614	29,431	25,920	26,450	33,687	31,771	38,207	33,638	31,956
재범률(%)	36.8	36.2	35.0	33.9	31.1	29.2	29.1	25.8	32.4	35.5	36.9

80) 더 나아가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재범율이 2012년은 37.3%, 2013년에는 41.6%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2012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58.4%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1.6%로 2011년도에 비해 0.9% 상승하였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12년 13.6%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⁸¹⁾.

2.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정책

최근 경찰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가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각 지방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리 그리고 소년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직 경찰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구역내에 있는 학교를 전담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⁸²⁾.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발생시 경찰과 학교간에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범죄예방교육의 전문화 등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발족되었다. 2012년 514명에서 2013년에는 681명으로 증원되어 1인당 16.7개교를 담당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⁸³⁾.

81) 여성가족부, 앞의 백서, 356면.

82) 김혁,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4권 제2호, 2013, 269면.

<표 10> 2013년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1	95	45	27	30	21	19	17	140	30	23	36	40	42	52	54	10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학교전담경찰관은 예방, 신고접수·사건처리는 물론 가·피해 학생 사후관리까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한다. 즉, 학교전담경찰관은 관내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전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폭력의 심의에 참석하여 객관적 심의와 형사사건절차 및 법률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법질서교육, 경찰관서 견학·상담 등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밖의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⁸⁴⁾.

<표 11>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와 협력	생활지도교사와 핫라인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 해결
예방 교육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이 소규모 학급단위로 학생 눈높이 예방교육 전담
자치위 참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형사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분쟁조정 및 가해학생 선도프램 연계 등
학생 상담	연락처를 적극 홍보하여 전화·카톡·SNS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고를 유도하고 가·피해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 지원
117 해결	전담경찰관 명단을 117센터와 공유하여 구체적 피해사실 및 사후관리 필요시 전담경찰관에 연계하여 대면 상담 및 보호·지원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83)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1,078명을 배치하여 1인 10개교 담당을 계획하고 있다.

84) 김혁, 앞의 논문, 269면.

<표 12>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범죄예방교육		학교 폭력 신고 접수 (건)	사건처리(회)		사후관리(명)		교사활동지원 (건)	
회수 (회)	인원 (명)		선도심사 위원회 참여(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참여 (회)	피해학생 멘토링	가해학생 선도	학생 지도	교권 확립
15,175	2,026,015	4,157	528	5,258	7,849	7,111	841	239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학생·교사·학부모 등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3년 11월 학생·교사 등 4,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 학교전담경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6%로 집계된 바 있다.

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012년 2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가 117로 통합되었고, 경찰은 2012년 6월 18일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117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경찰·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팀(센터당 3-6명)이 구성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학교폭력 관련 신고 접수, 상담, 수사, 지원 등의 통합 ‘맞춤형 원스톱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학생과 학부모가 국번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센터로 연결되며, 신고·접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직접 진출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시행한다⁸⁵⁾.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경중이나 가해학생의 전력,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85) 강욱·이주락·정석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범죄학, 대한범죄학회, 제7권 제2호, 2013, 41면.

분류한다. 즉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도대상 사건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⁸⁶⁾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고 일진회 소속 학생이나 상습폭력 사건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조치할 수 있게 된다⁸⁷⁾.

경찰은 117신고전화 홍보, 117 요금 무료화 추진, ‘117 익명 신고 어플(117 CHAT)’ 개발 등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통한 신원노출 방지책 마련, 상담종결 후 추가피해 등 확인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신고는 2011년 115건에서 2012년 80,127건으로 약 700% 가량 신고건수가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2012년 대비 약 21%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표 13> 2013년 월간 학교폭력 신고 추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101,524	4,730	6,033	10,575	12,203	12,026	10,896	8,876	4,383	6,686	8,561	8,577	7,978
日평균	278	152.6	215.5	341.1	406.8	387.9	363.2	286.3	141.4	222.9	276.2	285.9	257.4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또한 117신고센터에 대한 신고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 2014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찰청 모니터센터에서 117을 이용한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117 상담내용에 만족하였다고 답했고, 78%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⁸⁸⁾.

86) Wee센터는 교육청에서 설치하여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126개소가 있다. CYS-Net(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시도에 16개소, 시군구에 17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김혁, 앞의 논문, 273-274면, 각주 18 참조.

87) 김혁, 앞의 논문, 273-274면..

다.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 정책

1)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경찰의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는 소년범의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가 참여⁸⁹⁾한 가운데, 가정·학교환경 등 43개 비행촉발 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 선도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제도로서, 소년범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비행방지와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선도 및 처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범행사실 확인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형사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소년범의 개인적인 성향과 환경 등을 파악하여 이후 수사절차 및 선도과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는 다른 방향의 접근법이다⁹⁰⁾.

전문가 참여제는 2003년 10월 서울 송파경찰서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된 후, 2005년 8월 전국 45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운영으로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2009년 이후 운영관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137개 경찰서(1급지 128, 2급지 9)에서, 전체 소년범의 12.7%에 해당하는 11,548명이 전문가(390명) 참여조사를 받았다. 2014년에는 총

88)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89) 참여전문가는 지도교수와 심리사이다. 지도교수는 담당 지역 범죄심리사 수련생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자문을 한다. 범죄심리사는 1급 범죄심리사와 범죄심리사 수련생이 참여한다. 1급 범죄심리사는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하는 자로서 범죄심리학 관련 학위자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현장실습 및 300시간 수련 후 자격심사를 통사한 자를 말하며, 범죄심리사 수련생은 1급 범죄심리사 자격 심사를 위하여 수련하는 자로 지도교수의 감독을 받으며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경찰청, 2014년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운영계획」 참조..

90) 권봉관,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4면.

177개서(1급지 132, 2급지 23, 3급지 22)에서 총 324명의 전문가(지도교수 77명, 심리사 247명)가 소년범 조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⁹¹⁾.

<표 14>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운영관서(개)	52	52	52	60	70	100	120	137
전체소년범(명)	90,628	115,661	123,044	118,058	94,862명	86,621	107,018	90,694
참여소년범(명)	3,958	5,675	6,266	5,507	7,172명	7,639	10,258	11,548
참여비율(%)	4.4	4.9	5.1	4.7	7.6	8.8	9.6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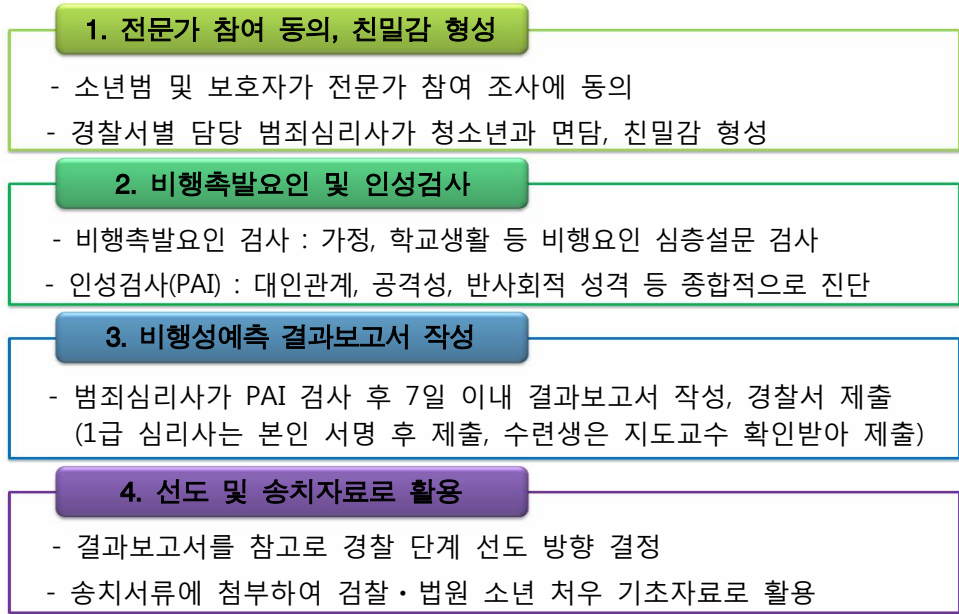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전문가 참여제 절차를 보면, [그림 1] 과 같이 ① 먼저, 가해소년 및 그 보호자가 전문가 참여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동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서별 담당 범죄심리사가 본검사 실시 전 대상 청소년과 면담을 통해 친밀감(Rapport)을 형성한다. ③ 다음으로 비행촉발요인 및 인성검사⁹²⁾가 이루어진다. ④ 이후 범죄심리사가 7일 이내 비행예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다. ⑤ 경찰은 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선도 방향을 결정하고 송치 서류에 첨부하여 검찰·법원의 소년 처우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전문가의 분석결과는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되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훈방·즉결심판 등 처분시에 활용되며,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 연계시 재비행 예측결과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개별 소년범 특성에 맞는 선도 교육을 통해 청소년 선도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91) 경찰청,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운영계획」, 2014 참조.

92) 비행촉발요인 검사는 가정환경·학교생활·비행전력 등 총 43개 항목의 심층질문 분석결과 점수에 따라 재비행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판별하는 심리과학적 비행요인 평가방법이고, 인성검사(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는 1991년 미국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자인 모레이가 개발한 인성평가 검사법으로, 총 344개 문항을 통해 대인관계, 약물, 공격성 등 개인의 심층적이고 다양한 22개의 인성평가 척도를 통해 비행성·범죄성·재범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검사이다. 경찰청,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운영계획」, 2014 참조.

<그림 1>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흐름도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전문가 참여제 시행 이후 평가연구는 전문가 재범예측의 신뢰성과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 386명에 대하여 재범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15] 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은 40%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저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 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 예측의 정확성이 검증된 바 있다. 또한 [표 16] 에서 보듯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의 재범율과 그렇지 않은 소년범을 비교한 결과, 전문가 조사 절차에 참여한 소년범의 재범율이 3.9%에 그쳐 2006년 전체 소년재범율의 29.2%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전문가 참여제가 조사과정중 심리전문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고, 심리전문가가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비행 억제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⁹³⁾.

<표 15> 전문가 참여 소년범 재범 추적결과⁹⁴⁾

구분	참여인원	저위험군	고위험군
인원	386	178	208
재범인원	91	8	83
재범율(%)	24.8	4.5	39.9

<표 16> 전문가 참여 소년범 재범률 분석결과⁹⁵⁾

구분	전체소년범	참여인원	저위험군	고위험군
인원	90,628	3,827	1,810	2,017
재범인원	26,450	150	34	116
재범율(%)	29.2	3.9	1.9	5.8

2) 선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이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사안에 따른 처분 및 선도방향 결정으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즉,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소년범의 경우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비공식적 제재를 부과하고, 선도조건부 훈방·즉결심판·입건 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경미사건에 대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를 하기 위함이다⁹⁶⁾.

93)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4권 제2호, 2009, 33면.

94) 권봉관, 앞의 논문, 155면.

95) 권봉관, 앞의 논문, 159면.

96) 선도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경찰청, '경미소년범 선도중심 사건처리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4 참조.

경찰은 2012년 3월 학교폭력 자진신고⁹⁷⁾ 가해학생에 대해 사안을 분류하여 경미범죄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즉결심판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3년에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을 모든 소년사건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총 1,020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훈방 1,838명, 즉결심판 586명의 결정이 내려졌다.

선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은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이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①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②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③ 촉법소년 사건 ④ 고소사건의 경우 즉결심판은 가능하나 훈방은 불가 ⑤ 불기소 의견이 명백한 사안(죄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이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6~7명으로 구성되고, 월 1~2회 개최 된다.

..... < 선도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경찰서장

※ 부득이한 경우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과장

△ 위 원

- 외부위원(2~3인) : 경찰서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활용

<인력풀 구성>

·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소년범 조사시 참여 전문가, 청소년 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소년 선도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경찰서장이 위촉

- 내부위원(2인 이내) : 여성청소년·생활안전·형사(수사)·청문감사관 중 경찰서장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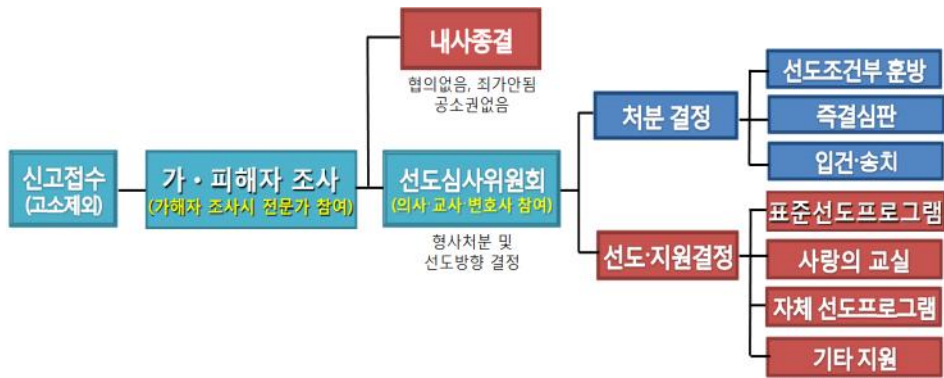
△ 간 사(1인) :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또는 여성청소년계장

.....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97)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은 2013년부터는 학교폭력 양상의 심각화 등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림 2] 와 같이 선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선도조건부 훈방(초범), 즉결심판 청구 또는 입건·검찰송치를 하고, 선도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소년은 선도프로그램 이수, 케어·치료, 기타 지원을 받는다. 결정시 고려사항으로는 비행의 내용·동기·원인·방법, 비행 후 정황, 소년범의 상습성 및 재비행 위험성, 소년의 인성, 보호자, 평상시 생활태도 및 주거환경,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있다.

<그림 2> 경미·초범 소년범 처리 절차도



※ 출처 : 경찰청, '경미소년범 선도중심 사건처리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4

3) 범죄예방교실

경찰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및 피해 예방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경찰관서별로 '범죄예방교실'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중점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는데 있다. 범죄예방교육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 4월부터는 교육대상에 유치원을 포함, 유년기부터 청소년범죄 예방 의식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성폭력·납치·유괴 등 피해 사례 소개 및 신고요령,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학교폭력 신고·상담번호 안내 등이다. 교육방법은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소규모 학급단위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등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는 시청각 교재를 제작·활용하며, 도전 골든벨 혹은 역할극 등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경찰은 2013년 총 7,378,17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0,217회에 걸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7> 2013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교육 활동

구분	학생 대상 예방교육				
	계	유치원	초	중	고
횟수	60,217	3,487	26,123	20,772	9,835
명	7,378,176	212,343	2,767,746	2,602,687	1,795,400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4) 소년범 사후 선도프로그램

가) 사랑의 교실

경찰은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외부 전문단체에 소년범의 교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경찰 수사 단계의 절도, 학교폭력 등 일반 소년범과 기타 학교 및 보호자가 교육을 의뢰한 학생들이다. 사랑의 교실은 1989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경찰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의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각 경찰서별로 교육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청소년지원센터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보

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종료 후에는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그 결정통보서와 교육수료증을 송부 받아 학교폭력 관련 사건기록에 붙여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⁹⁸⁾. 사랑의 교실 교육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감정해소 및 표현훈련, 마음의 힘 키우기, 역할극, 미술치료, 법교육,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⁹⁾. 2008년부터는 최종·연령 구분없이 1회성 집단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최종·연령·성별 구분 및 소집단(10명 이내)로 구분하여 5회 이상 교육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¹⁰⁰⁾. <표 18>과 같이 2013년에는 총 6,659명의 학생이 사랑의 교실 교육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총 96개 단체로부터 1,285명이 교육을 받았다.

<표 18> 2013·2014년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구 분	사랑의 교실				
	소계(명)	초	중	고	기타
2013년	6,659	174	3,518	2,605	362
20'14년 5월	1,285	23	644	552	66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은 전문가 참여분석 자료와 사랑의 교실 이수 결과보고서를 송치 서류에 첨부하여 검찰·법원의 소년범 처우 참고자료로 활용되게끔 하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박종택 부장판사)에서는 경찰단계의 범죄심리전문가 참여조사결과 및 선도교육실시 결과보고서가 처분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함으로써 그 효과를 긍정하였으며, 위험군별 경찰·법원간 역할 분담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도 있다¹⁰¹⁾.

98)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0면(김혁, 앞의 논문 278면에서 재인용).

99) 김혁, 앞의 논문, 278면;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100) 권봉관, 앞의 논문, 160면.

사랑의 교실을 통한 선도교육의 효과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교실이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랑의 교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의 재범율이 상당히 낮고, 일반 소년범의 재범율과 비교해서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랑의 교실 이수자의 재범률은 2003년 1.2%, 2004년 1.2%, 2005년 2.3%, 2006년 0.6%, 2007년 0.3%로 상당히 낮다¹⁰²⁾. 또한 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사랑의 교실 이수자의 재범률은 7.1%로 미이수 소년범의 9.4%보다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찰관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경찰은 사랑의 교실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관서별로 학교·NGO·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경찰체험, 봉사, 재범방지교육, 심리상담 등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선도교육은 사랑의 교실보다는 자체 선도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2013년 사랑의 교실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소년은 6,659명이고,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받은 소년은 16,061명으로 사랑의 교실보다 2배 이상 높다. 2014년 현재 경찰관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표준 운영(安)에 따라 2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이다. 자체 선도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와 관련한, 경찰청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7.7%로 미이수 소년범의 재범률 9.4% 보다 1.7% 가량 낮았다¹⁰³⁾.

101) 김향곤, 앞의 논문, 31면, 33면 참조. 위험군별 경찰·법원의 역할분담이란 범죄심리사의 재비행 위험성 분석 결과, 재비행 저위험군은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에 위탁하여 선도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검찰·법원단계에서 선도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2) 권봉관, 앞의 논문, 160면.

103)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이 통계는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19> 2013·2014년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자체 선도프로그램				
	소계(명)	초	중	고	기타
2013년	16,061	1,688	9,509	4,670	194
2014년 5월	3,339	149	2,299	874	27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더 나아가서 경찰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및 소년범을 선도하고 재범률을 억제하기 위해 비행소년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개입 등을 보완한 「표준 선도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고, 현재 운영 초기 단계에 있다. 경찰은 2013년 프로그램 개발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같은 해 8월 31일 모델 개발이 1차로 완료되었고, 9. 23~11.30까지 11개 지방청 3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4년 2월 최종적으로 표준 선도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다.

표준 선도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분석을 시행하고, 심리적 치유가 가능한 정신심리 선도·치유 프로그램으로 인지행동 요법,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즉심·훈방 대상 등 경미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¹⁰⁴⁾으로 하고, 1회 교육인원은 10명 이내이며, 4회기에 걸쳐 1일 2시간씩 총 10시간 동안 전문의 면담, 자기통제·의사소통방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운영병원과 경찰서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병원, 경찰서 회의실, 청소년경찰학교 등 청소년 친화적 장소로 선정된다. 운영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1명과 심리치료사(임상심리사) 1~2명이 참여하고 운영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중 1명이 대상 청소년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준비·진행 및 사후모

104) 즉심·훈방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정신의학적 진단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

니터링에 협조하게 된다. 프로그램 이수 후 전문의 명의 수료증을 수사 서류에 첨부하여 송치 또는 보관(훈방·즉심 종결시)한다. 2014년에는 42개 운영병원과 12개 지방청 83개 경찰서가 연계해서 표준 선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다¹⁰⁵⁾.

<표 20> 표준 선도프로그램 교육내용

구 분	주 제	교육 내용
1-1 회기	참여 동기 부여 및 라포 형성	- 규칙 정하기 - 참여자 서로에 대해 알아보기
1-2 회기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 폭력의 결과, 파급 효과, 처벌 이해하기
2회기	조망 수용/ 전환 및 공감 능력 향상	- 상대방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 학교폭력 피해자의 감정 체험하기(역할극)
3회기	분노조절	- 나의 분노 패턴 발견하기 - 분노 뒤에 숨은 진짜 마음 찾기 -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 익히기
	자기 통제 및 문제해결	- 나의 갈등 대처 유형, 갈등 해결 유형 알아보기 - 평화롭고 지혜로운 문제 해결방법 연습하기
4-1 회기	의사 소통 훈련	- 공감적 이해와 긍정적인 의사표현 훈련 연습하기 (I-message 훈련)
4-2 회기	긍정적 자아상, 희망 갖기	-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나의 모습 발견하기 -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긍정적인 자기상 형성하기

※ 출처 : 경찰청, “2014년 「표준 선도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105)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 2014년 「표준 선도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2014. 5.30) 참조.

3.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경찰 정책의 문제점

회복적 사법은 피해와 관계의 회복,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의 절차,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세 가지 핵심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피해의 원상회복과 당사자들의 사회재통합을 통한 사회평화의 재건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향한다. 앞에서 살펴본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예방 및 재범방지 정책들도 이러한 목표 달성과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현행 소년정책들은 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불완전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들은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완전히 혹은 불완전하게 배려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처벌을 강조하는 전통형사사법의 응보 논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가. 응보주의에 기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강조되는 응보 논리에 입각한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경찰의 소년정책들은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우선이라는 인식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최근에 소년범죄의 흉포화, 지능화, 저연령화에 따른 엄벌주의 경향이 경찰의 소년사법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예방교실인데, 이것은 학교폭력은 범죄이며,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는 식의 교육이다¹⁰⁶⁾. 물론,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이런 식의 교육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투영해

106) 강욱·이주락·정석진, 앞의 논문, 48면.

서 교육의 기본 방침과 내용을 재고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참여제의 경우, 재범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건부 형사처벌 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한 사회격리라는 전통 형사사법의 이분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¹⁰⁷⁾ 역시 응보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가해자 중심 : 피해자와 지역사회 배제

전통 형사사법이 가해자의 처벌과 사회복귀 그리고 이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면,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형사사법에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온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범죄로 인해 교란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사회평화 재건이라는 가치까지 포괄한다¹⁰⁸⁾. 회복적 절차는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및 대화 등 상호작용을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다. 결국, 회복적 사법은 국가와 가해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것을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건설적인 방식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¹⁰⁹⁾.

경찰의 경미초범 가해소년에 대한 선도 중심의 대책인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사랑의 교실,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 및 표준 선도프로그램들은 처벌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호·선도를 통해 가해소년의

107) 영국의 범죄사회학자 Garland는 개선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범죄자는 구별되며, 개선이 가능한 범죄자에게는 가능한 한 구금을 회피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반면에,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게는 무기징역과 사형, 엄격한 구금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형벌전략이 추구되는 것이 21세기 전환기 형사사법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7-18면 참조. 결국, 소년사법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엄벌주의(구금형 중심의 교정처우)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08) 이호중(2007), 앞의 논문, 327면.

109) 박상식,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1권 제2호, 2013, 212면.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재범방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경찰과 가해소년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고,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책이다. 즉, 사건처리 과정에서 심리전문가, 의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는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진술 또는 지역사회(시민)의 의견 개진 등은 배제되어 있다¹¹⁰⁾. 이러한 절차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중시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2차 피해자화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범죄 처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직접적 혹은 간접적)을 통한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데, 현행 경찰의 정책들은 이러한 만남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어 취급됨으로써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7 신고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창구 일원화는 피해자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고 등 초보단계에서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질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¹¹¹⁾.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발방지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피해학생 멘토링과 가해학생 선도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체제 구축에 집중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¹¹²⁾. 즉, 학교전담경

110) 강욱·이주락·정석진, 앞의 논문, 49면.

111) 강욱·이주락·정석진, 앞의 논문, 48면.

112) 강욱·이주락·정석진, 앞의 논문, 49면.

찰관의 활동이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를 서로 연결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역할과 지향점이 재정립될 수 있다면 경찰의 소년범죄 대응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방안 및 해결과제

1.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회복적 사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각 국의 법체계와 사회정치적 배경에 따라 제도 운영방식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회복적 실천은 대부분 기소전 단계인 경찰 수사(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건발생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사건을 다루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¹¹³⁾. 즉,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들은 가급적 사건발생 직후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쉽고,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용서를 받음으로써 재사회화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¹¹⁴⁾.

경찰단계 회복적 개입의 필요성은 한국에서 실시된 법원단계의 가족회합 실험연구¹¹⁵⁾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발생 후 시간

113)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9권 제2호, 2008, 130면.

114)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8), 앞의 책, 21면.

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공식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사자들(가족 포함)의 왜곡된 감정과 분노 그리고 직접 만남에 대한 회의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회합에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격려하는 노력과 시간은 더 많이 들고 그 만큼 성공 확률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¹⁶⁾.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나, 상처가 났을 때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하듯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발생 초기 경찰의 대응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처가 이미 굵아 터진 뒤에는 어떤 약을 쓰더라도 상처는 회복되기 힘들다. 회복적 접근법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가해소년의 행위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 검찰과 법원 단계보다는 사건을 최초로 인지·접수하는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재통합과 재범방지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소년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경찰에 알려지기 전, 형사 사법기관의 개입없이 당사자들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회복적 접근법의 잠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¹¹⁷⁾.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개입의 필요성은 경찰활동의 특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즉, 경찰은 굳이 회복적 사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평소 활동을 통해 형사사건 및 비형사사건의 갈등해결(예를 들면 당사자간의 합의

115) 이 연구는 2008년 법원 단계 회복적 사법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할 목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개정된 소년법(2008. 6. 22 시행)에 의해 도입된 소년부 판사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권고(제25조의 3)”를 가족회합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내용 및 결과에 관해서는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8), 앞의 책, 참조.

116) 박수선,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시범운영 사례,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5권 제1호, 2010, 119-120면.

117) 실제, 2007년 경찰단계 가족회합모임 실험연구를 기획했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現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근무)와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이미 당사자 및 부모들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자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예를 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단계 가족회합모임 실험연구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등을 통한 갈등조정)에 개입하는 등 이미 회복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복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활용방안

가. 경찰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의 연계

1) 경찰 다이버전의 의의와 회복적 사법과의 관계

경찰 다이버전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 가해자를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경미초범 소년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미초범 가해 소년을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신체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나 심리적 불안 증대가 초래될 수 있고, 조사의 반복으로 인하여 반성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오래 기간의 사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죄문화에 노출됨으로써 ‘악풍이 감염’되는 범죄문화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¹⁸⁾.

경찰 다이버전의 필요성은 검찰과 법원의 경미 소년사건 처리 경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이버전은 소년에 대한 별다른 조치없이 혼

118) 남미애·홍봉선·남승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교정성에 감·경찰 및 일반인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4호, 2002, 119면, 이승훈,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3면에서 재인용.

방시키는 “단순 다이버전”과 소년법의 보호이념을 반영한 선도·교육조치 등이 연계된 “개입형 다이버전”으로 대별할 수 있다¹¹⁹⁾. 전자는 소년법을 다시 범죄의 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무작정 노출시키는 무력한 전략¹²⁰⁾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주된 경미 소년사건 처리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는 경미사건의 대부분을 요보호성에 관한 제대로 된 조사조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무런 교육적 조치나 보호 조치없이 종국 처리되고 있다. 비행사실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단순히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¹²¹⁾. 또한 이렇게 처리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사안이 중하지 않고 판단이 복잡하지 않아 굳이 검찰이나 법원의 관여가 필요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건발생 초기인 경찰단계에서 개입적 다이버전을 통해 소년을 선도하고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가해자의 사회재통합과 재범방지, 그리고 비용절감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경찰 다이버전은 “개입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경찰 다이버전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반영해서 가해자의 책임인정 및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피해회복, 당사자들간의 관계회복과 사회재통합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경찰 다이버전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훈방 등 자체종결하거나 검찰·법원으로 송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사랑

119)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이호중(2004), 앞의 논문, 14면 참조.

120) 이호중(2004), 앞의 논문, 14면.

121)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 처리,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11권 제1호, 2011, 68면.

의 교실, 각종 선도프로그램들은 개입형 다이버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소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는 명확하게 결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경찰의 다이버전과 결합하여 실시한다면 범행 초기단계에 부정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 직후 효과적인 개입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지연과 부정적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¹²²⁾.

2) 실행방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가) 적용대상 사건의 유형 및 범위

대부분의 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주로 위험이 없는 사건, 즉, 주로 재산범이나 가벼운 폭력범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고 중대한 범죄의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복적 사법이 중대한 사건에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성범죄 등 중한 사건에도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회복적 사법의 옹호자들은 범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회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¹²³⁾. 하지만 모든 사건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22)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30면.

123) 다만, 이때에는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조정자(진행자)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사법외적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중한 범죄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성공에 따른 법적 효과에 있어 경한 범죄의 그것과는 차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프로그램의 적용, 특히 경찰 다이버전과 관련된 회복적 개입은 소위 강력범죄 내지 흉악범죄를 제외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¹²⁴⁾ 외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실무에 있어서도 대체로 그러하다¹²⁵⁾. 이것은 경찰 다이버전이 현행법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한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원초적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¹²⁶⁾. 또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형벌의 위화 효과를 감소시키고 피해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의 만남은 오히려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만일 “경미한 사건”이 단지 법적 기준에 따른 구분, 즉 범죄의 객관적 중대성에 따른 구분이라면, 이것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회복적 개입은 피해회복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범행의 법적 경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사건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의 회부를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 즉 법정형과 선고형에 기초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물론, 법적 기준에서 중대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복적 개입이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안이 중하다고 하여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

124) 대표적으로 김혁(2011), 앞의 논문, 61-86면 참조. 그에 따르면, 비행사실이 경미하여 단순 기소유예 또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결정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인 경우에 경찰단계의 회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중대사건의 경우, 소년 심판 및 형사재판, 교정 및 보호관찰의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25) 보다 일반적으로, 성인과 소년을 불문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기소 전 단계에서는 주로 소범죄에 적합하고, 기소 후 단계에서는 중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rio(R), 앞의 책, 136면 참조.

126) 경찰에서도 선도조건부 훈방의 대상사건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의거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정짓고 있다. 경찰청, 2014년 선도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참조.

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다만, 이 경우는 경찰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개입이 아니라 검찰·법원의 이후 형사제재 결정을 위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단순 기소유예로 처리될만한 너무 경미한 사건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감축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회통제망의 확대효과(net-widening)¹²⁷⁾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¹²⁸⁾ 경찰경고 혹은 선도프로그램을 거치게 한 후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¹²⁹⁾.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법적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범죄의 경중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남을 받아들일 태도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의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가해소년의 행위가 피해자 및 관련된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죄명은 무거운나 그 실질이 무겁지 않은 범죄, 예를 들어 죄명은 특수절도를 저질렀으나 실질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호기심으로 저지른 절도의 경우¹³⁰⁾에는 회복적 사법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대로, 사소하게 보이는 범죄(예를 들면, 피해품이 거의 없는 침입 절도)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회복적 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정

127) 이것은 다이버전 정책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 것으로서, 예컨대, 종래 아무런 조치없이 기소가 면제될 사건에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거치게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결국 사회통제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박상식,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69-171면 참조.

128) 이호중(2007), 앞의 논문, 325면.

129)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소년사건은 경고로 처리되지만, 그보다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회부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소년법원에 송치한 후 소년법원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김향곤, 앞의 논문, 43면.

130) 이 사례는 전지연, 경찰 다이버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200면에서 차용한 것이다.

신적 피해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의 회부는 형사법적 측면 및 형사외적 측면을 최대한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건회부결정은 경찰과 회복적 사법 전문가가 협의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회복적 사법의 절차는 비공식적인 화해의 절차이다. 이런 측면에서, 만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된 경찰다이버전이 법제화된다면, 법적 안정성 면에서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나, 사건회부의 기준을 법적 잣대에 의해 너무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¹³¹⁾. 여하튼, 경찰단계의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범위·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 사건의 범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개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 혹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도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중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는 가해자, 피해자, 조정자간의 3자관계로 진행되는 조정프로그램은 피해자없는 혹은 구체적인 피해자를 확정하기 힘든 범죄에는 적용하기 힘들지만, 범죄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후원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수 참여하는 회합이나 서클 프로그램들은 피해자없는 범죄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직접적인 법익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모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등 간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이들의 참여하에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승인과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¹³²⁾.

131) 가령, 소년법상으로 “경찰서장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규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경찰청 훈령·예규 등을 통해 사건회부의 기준과 범위를 좀 더 명시하면 될 것이다..

132) 이호중(2007), 앞의 논문, 316-317면 참조. 이 경우 회복적 프로그램 종료 후, 가해소년에

마지막으로, 경찰단계 회복적 개입이 모든 소년, 즉 촉법·우범·범죄 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우범소년의 경우에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단순 훈방 혹은 소년부 송치보다는 경찰 선도 후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선정과 프로그램 적용의 전제조건

앞서 본 것처럼, 외국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주로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소년범죄에 적용되고 있고, 그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성인 범죄에 대해서는 회합 모델보다는 조정 모델을, 소년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정 모델보다는 가족회합 모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¹³³⁾. 그 논거로는 1) 가족회합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혹은 후원자 등을 회합에 참여시켜 이들도 가해자·피해자와 함께 갈등해결의 주체로 등장시킨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회합프로그램은 소년범죄자의 치유와 재통합에 있어 가족 간 유대의 회복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2) 가족회합은 수치심의 긍정적 수용이라는 가치와 공동체의 유대관계의 회복이라는 지향점이 정서적 유대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소년범죄사건에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¹³⁴⁾. 비록 일회성에 그쳤지만 한국에서도 2007 경찰단계 가족회합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¹³⁵⁾. 따라서 한국과 외국에서 그 유용성이 확인된 가족회합 프로그램을 소년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다만, 실험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대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같은 상징적 원상회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33) 이호중(2007), 앞의 논문, 303면.

134) 김은경·이호중,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278-181면.

135) 이 실험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을 감안하여 형식과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회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가족회합은 ① 사건의 사실관계(피해-가해 관계)가 공소제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명되어 있어야 하고, ②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며, ③ 가해소년과 피해자 혹은 그들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될 수 있다¹³⁶⁾.

다) 회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경찰의 위치 및 역할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죄에 활용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회합이 선택되었다면,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즉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행 주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이 회합프로그램을 경찰이 주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해낸 경우가 있었다. 실제, 경찰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기존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볼 때, 경찰이 직접 회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절차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회복적 사법의 핵심은 범죄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 즉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한, 경찰은 관료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조직 목적을 위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의 원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¹³⁷⁾.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실행은 인력, 예산, 시간,

136)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01면; 이호중(2007), 앞의 논문, 319-320면 참조.

137) 보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 한국경찰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노력이 들어가는 힘든 과정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업무 과중, 인력과 예산 구조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회합 프로그램은 경찰 보다는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³⁸⁾. 현 상황에서 이러한 외부기관으로는 기존 복지영역의 청소년 관련 기구들, 예를 들면 각 지방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전담할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민간기구(예를 들면, 회복적 사법 센터)가 설립되어 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회복적 프로그램들이 이 기구를 통해 실행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³⁹⁾.

그렇다면 회합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경찰은 사건을 선별하여 위탁하고, 필요할 경우 회합에 참여하며, 회합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회합에 대한 정보 제공, 당사자들의 프로그램 참가에의 동의 획득, 회합수행기관에 대한 협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회합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벨기에 플랑드르지역 경찰처럼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질서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회복적 사법 이론 및 실무와 관련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고, 회합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지만 앎는다는 조건하에서, 경찰관¹⁴⁰⁾이 공동 진행

회복적 사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고소 문제해결이라는 검찰 목적에 의해 그 내용이 변질됨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지선,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39면 참조.
138)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8권 제3호, 2007, 1181면.

139)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40-141면 참조.

140)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자 혹은 조정자로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자 혹은 조정자로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만 하다.

라) 회합프로그램의 실행 절차¹⁴¹⁾

경찰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합 프로그램의 단계별 실행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¹⁴²⁾.

제1단계는 경찰의 사건 심사 및 회부 단계로, 경찰은 소년(촉법·범죄소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해명되면 선도심사위원회¹⁴³⁾에서 소년의 행위에 대한 수사기록, 전문가 참여제에 의한 심리전문가의 재범 위험성 판단자료, 담당경찰관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합프로그램에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회부결정이 나면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들 부모들에게 회합프로그램의 취지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뒤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필요하다면 담당경찰관은 당사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와 전화 혹은 직접 연결을 해 주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참여하기로 동의하면 동의서를 받은 후 동의서, 회합의뢰서 등 관련 서류를 외부 전문기관에 송부한다. 만일 피해자가 참여할 수 없거나¹⁴⁴⁾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는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회합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외부 전문기관과 협의한 후 회합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회합 미회부 결정이 나면 담당경찰관은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조사 후 사건을 검찰 혹은 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141) 경찰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합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호중(2004)과 김은경(2008)이 잘 제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두 사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현재 경찰에서 추진중인 소년범죄 대응정책들도 이 절차에 연계되도록 하였다

142) 여기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회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의 절차로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43) 아니면, 선도심사위원회의 인력풀내에서 별도의 회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44) 이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제2단계는 회합준비 및 실시 단계로, 회합전문기관에서 주관한다. 본 회합에서 경찰관은 단순 참여자 혹은 공동진행자(조정자)로 참여할 수 있다¹⁴⁵⁾. 당사자 간의 만남은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고 서신을 이용한 피해자의 감정전달 등 간접적인 방식도 가능하다. 회합의 가장 큰 목적은 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공통의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조정자는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타당하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계꿈 프로그램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회합 참여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가해 소년에 대한 적절한 이행 방식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합의 내용으로는 피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찰 등 전문기관의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3단계는 회합종결 후 경찰조치로, 경찰은 회합전문기관으로부터 결과에 상관없이 회합결과보고서를 받는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 혹은 법원소년부로 송치한다¹⁴⁶⁾. 합의에 도달하고 가해소년이 합의내용을 이행한 경우¹⁴⁷⁾는 다시 선도심사위원

145) 회합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여과없는 진술 및 의견개진의 기회가 보장된다. 이 점에서 경찰관에게 회합 참여는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회합에서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통해 경찰에서 평소 관심을 덜 가졌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향후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는 가해소년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의 범행유발요인 및 환경 등을 듣게 됨으로써 통상적인 경찰조사에서는 얻기 힘든 소년범죄의 원인과 실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46) 이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회합결과보고서도 검찰에 송치하되, 이를 근거로 이후 검찰이나 법원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147) 그런데,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점검을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의 문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김은경의 주장처럼, 경찰도 회합운영기관도 현실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38-139면 참조.

회의 결정에 따라 선도조건부 훈방 혹은 검찰이나 법원소년부에 송치하
 되, 이때에도 합의서 및 회합결과보고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의 자료가 되도록 한다.

나. 소년의 지역사회에의 위탁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않은
 경찰단계의 회복적 개입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경찰의 위
 탁 처분(referral)을 참조할 만 하다. 위탁이란 사법기관에서 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¹⁴⁸⁾. 회복적 사법의 목
 적중의 하나가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면, 경찰에 의한 위탁은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전략 및 민간참여 인프라
 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¹⁴⁹⁾. 한국의 경우, 경찰이 소년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복지기관에 소년을 위탁하고
 이 기관에서 소년으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비공식적 회복적 활동

전술한 두 가지 경찰단계의 회복적 개입은 소년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은 다른 사법기관과는 달리 사

148) 캐나다 소년사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 경찰의 위탁 처분에 대해서는 최
 응렬·정우일·차훈진, 앞의 논문, 24-25면 참고.

149)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32면.

법처리가 개시되기 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 경찰의 역할은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라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평화유지 혹은 평화건설자”서의 측면이 강조된다. 즉, 개별 경찰관은 소년의 비행 혹은 범죄와 관련된 갈등의 현장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 원리로 접근함으로써 회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사건이 형사화되기 이전에 갈등의 당사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형사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범죄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비공식적 개입을 회복적 경찰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회복적 활동은 일차적으로 길거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범죄 혹은 비행관련)을 인지한 경우, 바로 사건을 입건하기 보다는 지구대 등 적당한 장소로 안내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필요할 경우 그들의 부모가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경찰이 지배하거나 특정한 무언가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일단 귀가조치하고, 당사자들 중 일방이 정식 조사를 원한다면 사건을 입건하되, 공식적인 수사절차에서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회복적 활동은 피해자의 지원·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공식적인 사건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정신적 위로를 하며, 필요한 경우 One-stop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활동이다¹⁵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만 따로 떼서 회복적 사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회복적 사법의 출발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있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이러한 활동도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부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현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속에서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성공적인 회복적 개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가. 선결과제 : 경찰관의 인식 전환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바와 같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소년범죄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회복적 사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통적 책임응보 관점에 치우쳐져 있을 경우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힘들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갈등해결에 있어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통적 경찰활동에 익숙한 경찰관에게는 자칫 이것이 그들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회복적 개입에 대한 저항과 수동적 자세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경찰의 소년범죄 처리실무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를 다루는 경찰관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다.

150)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정책의 슬로건으로 3H, 즉, 듣는 것(Hear), 치유하는 것(Healing), 돕는 것(Help)를 제안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¹⁵¹⁾. 경찰관들이 회복적 사법의 철학과 실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할 때 정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¹⁵²⁾.

더 나아가서, Bazemore와 Griffiths에 따르면, 경찰관의 인식전환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공격적인 순찰과 강제보다는 평화 유지, 갈등해결, 지역사회 건설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는 회복적 경찰 활동의 가치를 지원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¹⁵³⁾.

나. 법적 뒷받침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은 법제화 없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회복적 사법과 연계된 경찰 다이버전의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일정한 소년사건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경찰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경찰단계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 특히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나라에서는 회복적 프로그램에의 위탁 및 사건의 종결과 관련한 경찰재량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 소년법 및 형사소송법상 전건송치주의¹⁵⁴⁾로 인해 경찰이 소년사건을 검찰(범죄소년의 경우) 또는 소년법원(촉법·우범소년의 경우)에 송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소년법 개정위원회에서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와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151)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152) 강욱·이주락·정석진, 앞의 논문, 51-52면.

153) Bazemore(G.), Griffiths(C.), 앞의 논문, 342면.

154) 소년법 제4조 제2항, 제48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경찰의 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을 개정 소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2008년 6월 개정된 소년법에는 검찰단계 다이버전인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소년법 제49조의 3)와 법원단계 회복적 개입의 일종인 ‘화해권고제도’(소년법 제25조의 3)만 신설되었을 뿐 결국 경찰 다이버전 구상은 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의 독자적인 다이버전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무적으로 경찰은 소년법상 전건송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년사범을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하는 것은 아니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3조와 제19조)에 의거해서 경미초범 소년에 대해 “선도조건부 훈방(또는 형사입건유예)”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¹⁵⁵⁾. 그러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근거한 경찰훈방권은 즉결심판의 대상¹⁵⁶⁾이 되는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적용범위상의 한계가 있고¹⁵⁷⁾, 즉결심판절차법을 경찰훈방권의 법적근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며, 훈방에 대한 법적 미비로 경찰관들이 훈방과 송치 사이에서 결정을 할 때 많은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⁵⁸⁾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범주의 소년과 관련된 경찰훈방권을 입법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155) 관련된 경찰 내부 규정으로는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1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214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여전히 소년법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훈방 조치를 법적으로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156)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157) 이와 관련하여, 우범소년과 촉범소년에 대한 훈방이나 산도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호의 ‘범죄예방활동’의 범주에서 법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호중(2004), 앞의 논문, 35-38면 참조.

158) 소년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경찰관의 91.6%가 전건 송치주의 조항과 경찰에서 행하는 훈방에 대한 조항 미비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선도와 처벌 중 처리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훈방을 결정할 경우 차후에 벗어날 책임 소지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담당할 사건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유진, “비행청소년 예방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소년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56면 이하, 한상민, 앞의 논문, 85면에서 재인용.

경찰훈방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는 가해소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소년은 기존의 수사절차와 여타 조치들을 부가적으로 떠안고, 이후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까지 그대로 안게 된다. 그 결과 가해소년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¹⁵⁹⁾. 물론 경찰 훈방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겠지만 소년범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경찰의 훈방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낙인방지와 재범예방을 위한 소년사법정책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년범에 한해서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¹⁶⁰⁾. 즉, 경찰에 훈방권 내지 다이버전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경찰이 훈방(불입건) 또는 입건·송치 등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¹⁶¹⁾.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과 결합된 경찰 다이버전을 어떤 방식으로 법제도화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년법 제4조에 경찰 다이버전(훈방)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회복적 사법 절차를 활용하고 다이버전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다이버전 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하는 것¹⁶²⁾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상에 경찰단계를 포함한 모든 형사사법절차의 단계에서 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건을 회복적

159) 권봉관, 앞의 논문, 65-66면.

160) 정현미,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5권 제1호, 2010, 29-30면.

161)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30-131면.

162) 김은경(2007), 앞의 논문, 1179면; 김향곤 2009, 43면.

사법절차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 혹은 전통 형사절차로의 복귀가 결정되는 절차법적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경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일정한 내부적 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¹⁶³⁾.

또한 경찰에 의한 소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의 위탁을 통한 소년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 간의 연결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경찰 등 사법기관에 의한 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회복적 사법실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⁶⁴⁾.

다.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의 철학에 부합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효한 실천 프로그램(또는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연구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것은 법제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의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제도화 되기까지 혹은 제도화와는 상관 없이 끊임없는 예비실험 및 평가 과정이 수반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천프로그램의 개발·실험·평가는 프로그램 운영기관, 경찰, 학계

163) 강동욱, 소년법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제16권 제1호, 2013, 88면.

164)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31-132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실제 2007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경찰청·형사정책연구원·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공동으로 경미소년사건에 대한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연계된 회복적 사법 실무프로그램의 하나인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 모델이 시범운영된 바 있다. 회합의 절차와 내용을 보면, 먼저 담당 경찰관이 수사 또는 조사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외부 민간 전문기관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 위탁하면 이 기관에서 예비조정을 거쳐 피해자, 가해소년, 보호자의 참여하에 회합이 실시되었다. 회합 실시 후 합의가 도출되면 그 결과가 경찰에 통보되더라도 경찰의 송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찰은 ‘합의결과보고서’를 수사(조사) 기록과 함께 검사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여 검사 또는 소년부 판사의 처분결정에 반영토록 하였다¹⁶⁵⁾. 시범운영 결과, 회합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공정성,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등, 경찰단계의 회합프로그램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조기사회복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종결권이 없어 당사자들(특히, 가해자)을 회합에 참여하게 할 유인동기가 부족하고 합의불이행시 강제력이 없으며, 경찰의 이해도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참여한 총 13개 경찰서에서 단 10건만 회합에 의뢰하고 그 중 6건만 회합이 개최되는 등 법적·실무적 한계도 지적되었다¹⁶⁶⁾. 이런 한계 때문인지 이후 경찰청 단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험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힐링위원

165) 김혁(2011), 앞의 논문, 69-70면.

166) 2007년 경찰단계 회합 프로그램 시범운영의 상세한 내용·성과·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향곤, 앞의 논문, 29-51면; 정현미, 앞의 논문, 19-34면; 박수선, 앞의 논문, 107-128면 참조.

회』이고, 후자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With You 프로그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는 2012년 6월부터 7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청소년 힐링위원회’를 시범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¹⁶⁷⁾. 이 위원회는 범죄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년범죄나 비행에 대하여 형사입건 위주로 대응하는 대신, 화해와 반성의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회복적 공동체 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이하 RCJ)¹⁶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또한 힐링위원회는 기존의 전문가참여제, 사랑의 교실, 학교폭력 자신신고 제도 등과 연계되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① 즉결심판 청구 사안은 심사 후 형사입건을 하거나 즉심을 청구하고 ② 선도조건부 훈방 사안은 심사 후 사건접수를 하거나 불입건(훈방)을 결정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상 반드시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과 동시에 선도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다. 힐링위원회 위원들은 경찰관·교사·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고 문제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사회 각 계층의 시민들로 인력풀을 구성하며, 필요시 사안별로 검토하여 사건 당사자의 지인 등 맞춤형 참여위원을 지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위원들은 담당경찰관이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회

167) 이하 내용은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김성중, 김주찬,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경찰단계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13권 제2호, 2013, 51-77을 참조, 요약한 것이다.

168) RCJ는 회복적 사법과 공동체 사법이 통합된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괴된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데 보다 강한 강조점을 두고, 회복의 과정은 지역사회가 주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RCJ는 피해자의 참여 그리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대화라는 틀에 그렇게 엄매이지 않는 접근법으로 피해자없는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양천경찰서의 힐링위원회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RCJ의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를 자각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를 다시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한다는 데 있다. RCJ에 관해서는 이호중(2004), 앞의 논문, 27-29면 참조.

부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하여 중개역할을 수행하며 사안별로 피해회복·화해·청소년 선도 및 상담·지원 등 해결에 필요한 수단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수단 및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성실히 이행하는지,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 등 프로그램 추진결과를 심사하며 심사한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하여 사건 처리시 적용하게 한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의 힐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총 5건의 사례가 다루어졌는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지역주민, 청소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주체 명확화, 힐링위원회 개최 후 사후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방안도 지적되었다.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의 With You(너와 함께) 프로그램¹⁶⁹⁾은 경찰단계에서 가해소년, 피해자, 이들의 부모·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일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위 “경찰회합 프로그램(police-led conferencing programme)”이다¹⁷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먼저, 2007년 시범운영과는 달리, 경찰이 소년사건을 단순히 회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진행자(facilitator or coordinator)로서 회합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3. 5~3. 7간 학교전담경찰관(30여명)을 대상으로 강원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자 양성교육이 ‘비폭력평화물결’ 소속 강사에 의해 진행되었

169) 아래 내용은 강원지방경찰청, “회복적 대화기법을 활용한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운영계획, 2014 등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내부 자료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여성청소년계장 백두용 경정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170) 강원청의 이 프로그램은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2014. 3. 6 KBS 강원뉴스 “학교폭력 처벌보다 치유”, 2014. 4. 30 강원일보 “내 아이 괴롭힌 학생들, 대화해보니 용서됐다” 등 참조.

다. 두 번째로, With You 프로그램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대화모임을 통해 가해자의 ‘진심어린 뉘우침과 사과’와 ‘피해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범방지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상처 치유’ 및 ‘자존감 회복’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제고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관계회복’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3월 초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회합은 3.8부터 5.25까지 총 17개 경찰서 중 13개 경찰서에서 32건이 개최되었고, 그 중 30건인 93.8%가 성공(합의 도출)에 이르렀다. 2007년 시범운영이 6건에 그쳤고, 법제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는 엄청난 숫자이며¹⁷¹⁾, 더 놀라운 것은 회합 참석자는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든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도 프로그램을 권고하겠다는 등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 부족, 인력·예산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강원지방경찰청은 7월중 중간평가 등을 한 뒤 9월부터 With you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특성상 탄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청 단위의 통일된 실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법제화도 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도 판단된다. 일차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양천서와 강원지방청의 사례에서 처럼 일단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경찰서 혹은 지방청 단위로 운영을 확대해나가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경찰청 단위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지방청과 경찰서 자체로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유관기관과 함

171) 강원지방경찰청 백두용 경정에 따르면, 기획 당시부터 회합 건수에는 얽매이지 않았고, 강원지방경찰청장 역시 건수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백두용 경정은 32건이라는 비교적 많은 수의 회합이 이루어진 데에는 경찰과 유관기관의 노력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게 프로그램을 설계·실험·평가해 나가는 방향이 더욱 실효성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포함) 등 경찰교육기관에 『회복적 경찰활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앞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험을 주도해 나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 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

소년범죄에 대한 회복적 실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회복적 사법을 담당하는 실무경찰관들이 회복적 사법의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프로그램이 표면적으로는 화해나 중재를 강조하면서도 경찰실무적 필요에서 관료제화되고 처벌목적에 종속될 위험이 많다¹⁷²⁾.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 실무에 관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경찰에서는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고,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찰교육훈련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과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외부기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경찰학교 등을 활용해서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¹⁷³⁾. 이 경우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내용은 이론 뿐만 아니라 역할극(role play) 등을 통한 실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경찰이 일정한 소년사건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관이 직접 진행자 혹은 조정자가 되

172) 김은경(2008), 앞의 논문, 141면.

173) 한국에서는 검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에 참여하는 형사조정위원(형사조정가)의 교육을 법무부(법무부 주최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등 대학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될 것이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강원지방경찰청의 경우처럼 지역사회와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학교전담경찰관 혹은 지원자 중에서 선별하여 이들을 진행자 또는 조정가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한 경찰관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인증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조직 전체에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 스며들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임경찰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경찰대학에 그리고 현직경찰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교육원·수사연수원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된 것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 및 경찰 자체 홍보 시책을 적극 활용해서 경찰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장점과 그 성과, 앞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소년범죄와 관련한 경찰단계에서의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위해서는 경찰, 프로그램 실행기관(경찰이 실행기관이 아닐 경우), 유관기관, 지역사회간에 회복적 사법에 관한 공유된 인식기반과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세 번째, 적절한 사건기준 및 개입을 위한 경찰 자체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회복적 사법을 경찰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철학을 제대로 경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복적 사법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구체적인 실행모델 그리고 특수하게는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하는 회복적 사법이 교착상태에 있는 소년정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경찰 역할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비교모델로서, 제3장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외국 경찰의 회복적 접근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외국경찰은 경찰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에의 위탁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을 실무에 적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해 그 효과도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경찰 자체의 실험프로젝트 수행 등 자생적인 노력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관련된 경찰재량권의 법제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성공 사례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외국경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4

장에서는 먼저, 소년범죄에 대한 한국경찰의 대응정책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소년범죄 처리와 관련한 경찰단계 회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적용방안 그리고 성공적인 회복적 개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짚어보았다. 최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선도 위주의 정책들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응보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있거나 가해자에 초점을 둬므로써 피해의 원상회복적 관점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아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들을 보완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투영된 경찰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찰단계에서 소년사건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경찰 다이버전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인데, 경찰이 적절한 사건을 프로그램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훈방 혹은 정식 사건처리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둘째, 경찰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및 민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서 의의가 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보다는 좀 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공식적인 사법처리가 개시되기 前 갈등의 현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경찰활동의 방식이다.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성공적인 회복적 개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소년범죄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경찰관의 인식전환, 둘째, 훈방 등 경찰재량권 및 경찰위탁의 법제화 등 입법적 조치, 셋째, 유효한 실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험, 넷째,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이 그것이다.

제2절 전망

지금도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교착상태에 있다. 이것은 이제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달리 해야 할”¹⁷⁴⁾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소년범죄대응방식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소년사건 처리의 제1선에 있는 경찰에서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전향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법적·제도적 한계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을 경찰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앞에서 본 강원지방경찰청의 With You 프로젝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과 한계 내에서 더 많은 경찰관서에서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설계·운영하고, 조치의 수혜자인 국민들로부터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제도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소년범죄를 처리함에 있어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비단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는 갈등의 당사자들인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 모두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찰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찰이 회복적 사법 실천의 서포터 내지 주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174)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앞의 논문, 202면.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험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은경·이호중,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 김지선,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 이원상,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2. 학술논문

- 강동욱,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제16권 제1호, 2013, 87-114면.
- 강욱·이주락·정석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범죄학, 대한범죄학회, 제7권 제2호, 2013, 35-56면.

-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347-375면.
-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8권 제3호, 2007, 1159-1188면.
-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9권 제2호, 2008, 93-145면.
-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4권 제2호, 2009, 29-51면.
-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 처리,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11권 제1호, 2011, 61-86면.
- 김혁,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4권 제2호, 2013, 261-299면.
-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8권 제1호, 201-225면.
- 박상식,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모델과 실천모델,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63-196면.
- 박상식,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1권 제2호, 2013, 211-241면.

- 박수선,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시범운영 사례,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5권 제1호, 2010, 107-128면.
- 석청호, 회복적 사법과 경찰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제10권 제1호, 2008, 131-156면.
- 원혜욱,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제14권 제1호, 2006, 307-324면.
-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7, 297-338면.
- 전지연, 경찰 다이버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제16권 제2호, 2004, 187-207면.
- 정현미,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5권 제1호, 2010, 19-34면.
- 차훈진, 경찰의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05, 229-253면.
- 최응렬 · 정우일 · 차훈진,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캐나다 경찰의 비사법 처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7권 제1호, 2006, 5-46면.

2. 학위논문

권봉관,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상식,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승훈,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상민, 소년법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2013.

3. 기타

강원일보 “내 아이 괴롭힌 학생들, 대화해보니 용서됐다”(2014. 4. 30).

강원지방경찰청, “회복적 대화기법을 활용한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운영계획, 2014.

경찰청, ‘경미소년범 선도중심 사건처리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계획’, 2014.

경찰청, 경찰백서, 2012

경찰청,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운영계획」, 2014.

경찰청, 「표준 선도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201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3.

KBS 강원뉴스 “학교폭력 처벌보다 치유”(2014. 3. 6).

II. 외국문헌

1. 단행본

Aertsen(I.) et al., Renouer les liens sociaux. Médiation et justice réparatrice en Europe, Ed. du Conseil de l'Europe, 2004.

Braithwaite(J.),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Cario(R.), Justice restaurative. Principes et promesses, Ed. L'Harmattan, Coll. Traité de sciences criminelles, vol. 8, 2è éd. 2010.

Dussich(J.P.L), Schellenberg(J.) (Eds.), The promise of restorative justice: New approaches for criminal justice and beyond, Lynne Rienner pub., 2010.

Johnstone(G.),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Willan Pub, 2002.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 2007.

McCOLD(P.), Wachtel(B.), Restorative policing experiment : The Bethlehem Pennsylvania Police Family Group Conferencing Project. Pipersville, PA: Community Service Foundation, 1998.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Nicholl(C.),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 Exploring the links for the delivery of a balanced approach to public safet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1999.

Pignoux(N.), La répar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s pénales, Paris : L'Harmattan, coll. Sciences criminelles, 2008.

Sherman(L.W.), Strang(H.), Barnes(G.C.), Braithwaite(J.), Experiments in Restorative Policing : a Progress Report on the Canberra Reintegrative Shaming Experiments (RISE), 1999, www.aic.gov.au/rjustice/australia.htm.

Van Ness(D.), Strong(K.), Restoring Justice (1997), Cincinnati OH : Anderson Publishing, fourth edition. 2010.

Zehr(H.),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Pub., 2002.

2. 논문

Bazemore(G.), Griffiths(C.), Police reform, restorative justice and restorative policing,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4, No. 4, 2003, pp. 336-338.

Chatterjee(J.), Elliott(L.), Restorative Policing in Canada: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Community Justice Forums and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4, No. 4, 2003, pp. 347-359.

Hoyle(C.), Policing and restorative justice, in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 2007, pp. 292-311.

Hoyle(C.), Restorative Justice Policing in Thames Valley,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189-203.

Johnstone(G.), Van Ness(D.),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in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 2007, pp. 5-23.

O'Mahony(D.), Doak(J.), Restorative Justice and Police-led Cautioning Practic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139-157.

Pranis(K.), Restorative values, in Johnstone(G.), Van Ness(D.)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 2007, pp. 59-74.

Shapland(J.),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in the context of community policing,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119-138.

Van Stokkom(B.), Moor(L.G.), Pass the buck: Restorative policing in the Netherlands,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101-117.

Vanfraechem(I.), Restorative policing: in pursuit of principles, in Flanders,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39-64.

Vynckier(G.), A comparative view on the role of the police in different restorative practices in Flanders, in Moor(L.G.), Peters(T.), Ponsaers(P.), Shapland(J.), Van Stokkom(B.) (eds.), Restorative policing, Journal of Police Studies Vol. 2009/2, nr. 11, pp. 19-37.

Weitekamp(E.), The history of restorative justice, in Johnstone (G.) (Ed.), A restorative justice reader. Texts, sources, context, Willan Pub, 2003, pp. 111-124.

3. 기타

Lofty(M.), Restorative Policing, "Dreaming of New Reality,"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ferencing Circles and other Restorative Practice, August 8-10, Minneapolis, Minnesota, 2002, www.iirp.org/library/mn02/mn02_lofty.html.

UN Economic and Social resolution 2000/14 of 27 July 2000 o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criminal matters in: Resolution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ECOSOC at its substantive session of 2000(5 to 28 July 2000), Distr: General, 15 Aug

2000.

책임연구보고서 2014-04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 방안

2015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